

第12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會 議 錄

(2001.6.20.~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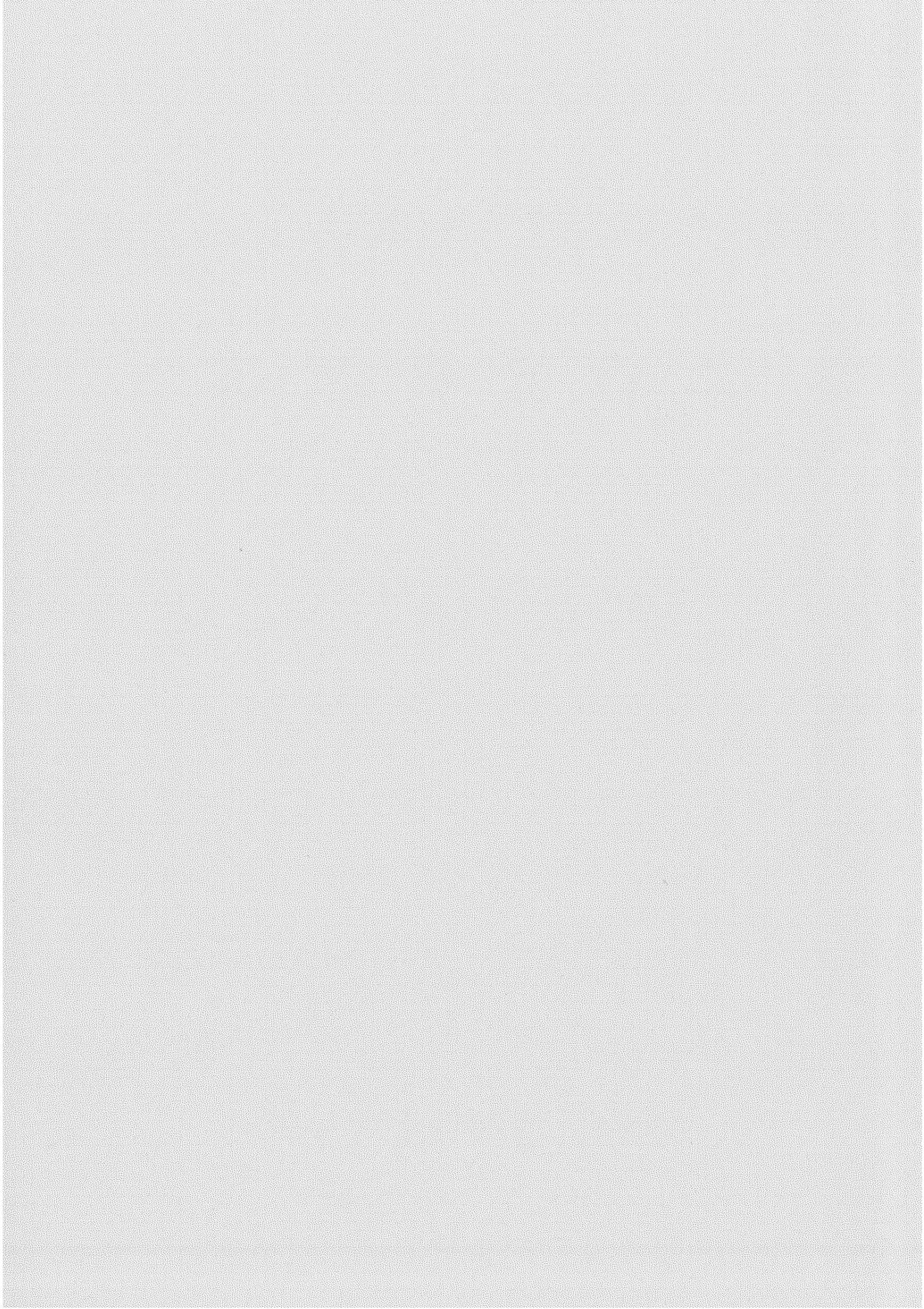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2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 I . 개회식 .....3
- II . 제1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5
- III . 제1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3
- IV . 부 록
  - 1. 의사일정 .....21
  - 2.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23
  -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3
  -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67
  - 5.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7
  - 6.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9
  - 7.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83
  - 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7
  - 9.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 .....91

10.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 101

## **Ⅶ. 별 책 부 록**

-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서(별책 1)
-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개요(별책 2)
- ▶ 2000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별책 3)
- ▶ 2000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작성지침(별책 4)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6월 20일 (수요일) 11시 00분

## 開會式順(第129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왕년)

(11시 00분 개식) 본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 ● 의사담당 김왕년

(11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1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최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6월 20일 (수요일) 11시 02분

## 議事日程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29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5.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8.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29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재의)
3.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6.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교육감 제출)
7.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교육감 제출)
8.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재의)
9.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재의)

(11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손만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충청북도교

## [제129회-제1차 본회의]

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과장이 해외연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

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경과보고

#### ● 의장 손만재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옴)

#### ● 의사과장 이상기

의사과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6월 11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회 요구가 있어, 2001년 6월 12일 공고 제2001-6호로 제1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동일자로 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증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과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그리고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신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동일자로 집행청에 이송하였으며, 현재 집회 중인 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집행청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 의장 손만재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 제129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05분)

####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제1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을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29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임사회 회기는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6.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 08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은 동일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재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세계수준의 선진교육을 지향하는 활기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운영업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및 폐지할 경우에 그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입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학사제도, 공중위생, 환경보전, 행정심판, 지방시험, 정보화관련제도 등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

지할 경우 입법예고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이나 입법예고가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경우 등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는 입법예고의 방법 및 기간, 예고안의 열람 및 복사, 공청회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예고사항의 확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예고 사항이 아닐 경우에도 입법예고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  
예고에관한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  
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4월 2일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4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 조례안 시안을 작성하고,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충청북도 도보, 우리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회보 등에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6월 1일 충청북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본 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감이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도 위탁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78조제2항과 관련하여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등도 필요할 경우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행정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대장가 1,000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및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잡종재산의 대부시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수입증대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집중지역 분산효과를 위하여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 시설의 지방 이전시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현행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다섯째,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유리할 때, 또는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이 불가피할 때 등에 대비하여 전세권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자귀수정, 용어 정비, 상충되는 조항 정비 등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  
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충북고등학교에 기부된 재산을 기부채납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2001년 5월 25일 동교 졸업생으로부터 아무런 조건없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도서관 및 기숙사 총 1,898㎡를 기부채납 신청받아 이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별첨 4)

(끝에 실음)

다음은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된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지난 5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세입결산은 9,025억 742만원이고, 세출은 7,838억 6,333만원으로서 1,186억 4,409만원의 세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497억 9,406

만원이 이월사업비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87억 8,266만원으로서 2001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잔액이 6,737만원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9,025억 3,11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9,025억 74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중 자체수입은 22.8%인 2,056억 7,111만원이고, 의존수입은 77.2%인 6,968억 3,631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022억 5,142만원으로서, 86.8%인 7,838억 6,333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277억 6,573만원, 사고이월 220억 2,833만원, 도합 497억 9,40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85억 9,40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액의 내용을 성질별로 분리하면, 인건비 3,308억 7,984만원, 물건비 1,954억 7,052만원, 경상이전비 1,221억 8,803만원, 자본지출경비 1,203억 2,242만원, 국내차입금상환이 150억원, 반환금, 기타경비가 252만원으로, 총 7,838억 6,33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채권액은 대지료 등 4종에 2,989만원, 폐교재산 매각분납금 5억 9,486만원, 원어민교사 임대차전세금 등 2억 5,6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 258억 2,131만원으로 총 267억 206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차입금 970억 8,000만원으로 이는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과

[제129회-제1차 본회의]

학교통·폐합지원비, 학교시설비 등에 충당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1조 7,476억 6,100만원, 잡종재산이 385억 5,900만원으로서 총 1조 7,862억 2,000만원이고, 물품현재액은 총 1만 3,365점에 705억 4,100만원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단위의 교육자치력을 배양하고자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학교 기본운영경비로 377억 5,501만원, 목적지원 경비로 686억 407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0년도 9월 개교한 증안초등학교와 2001년도 3월에 개교한 청주 북대중학교 및 2002년도 개교예정인 개신초등학교 외 1개교 시설에 155억 2,153만원을 투자하였고,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부족교실 증축에 181억 6,580만원, 기타 학교시설 확충에 73억 7,47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702억 3,633만원과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에 총 20억 1,792만원을 투자하였고, 정보화 사회의 적응력을 기르고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한 교육정보화 사업에 68억 9,49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도모와 국민생활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급식시설비로 54억

1,900만원과 운영비로 62억 5,395만원, 결식아동중식비로 38억 5,08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사립학교 재정지원 확대에 균형있는 학교발전을 도모하고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409억 5,744만원, 시설비 등 기타 사업에 171억 6,124만원으로 총 581억 1,86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참 조 :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별첨 5)  
(끝에 실음)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별첨 1)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별첨 2)

2000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건서(별첨 3)

2000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작성지침(별첨 4)

다음은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에 2,846만 8,890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8년 9월 8일 16시 5분경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유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 이재진 어린이가 학교통학버스에서 하차하여 도로를 횡단하다가 학교통학버스를 추월하여 달리던 승용차에 받혀 1998년 9월 18일 사망한 사건으로, 본 사고차량이 종합

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 회사에서는 학교통학버스에 보조교사 미 탑승과 어린이의 하차 및 도로횡단을 운전자가 보살펴 주지 않은 과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용차와 통학버스의 책임분담비율이 3 대 1로 판결됨에 따라, 보험회사측이 부모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병원치료비, 변호사비, 수수료 등의 구상금을 청구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 참 조 :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별첨 6)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

9.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

(11시 20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과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를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는 각각 의장을 제외한 여

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도 역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 중 두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로, 2000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6월 22일까지 심사하여 주시고, 그 심사결과를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12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이기수 위원님과 이상일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 산회 후에는 곧바로 소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청 관계관께서도 위원님들의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제129회-제1차 본회의]

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

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별첨 2)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3)
- ▶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별첨 4)
- ▶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별첨 5)
- ▶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별첨 6)

※ 별 책 부 록

-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서(별책 1)
-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개요(별책 2)
- ▶ 2000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별책 3)
- ▶ 2000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작성지침(별책 4)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6월 23일 (토요일) 11시 00분

## 議事日程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4.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4.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교육감 제출)
5.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교육감 제출)

(11시 00분 개의)

###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소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

리조례증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이충원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충원

이번에 조례심사를 하는데 제가 위원장을 맡았던 이충원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위 안건은 지난 6월 11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 회부되어 2차에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문의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및 폐지할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예

고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입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목적이 타당하고 규정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7)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규정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도 위탁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 심의범위를 확대하여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을 심의 대상으로 하며, 행정사무 간소화를 위해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와 대장가 1,000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용도폐지·변경에 대하여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하여 각종 재산의 사용요율과 대부요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내용이 적법하며 타

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역시 소수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  
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8)  
(끝에 실음)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계서도 그 동안 소  
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노고  
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아  
감)

● 의장 손만재

이충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두 건의 조례안  
은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한 조례심사소위원  
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  
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환 위원 본회의장 들어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  
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  
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  
계획안

(11시 10분)

● 의장 손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  
획제2회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5.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

비지출승인의건

(11시 10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이상일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이상일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외 1건의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위 안건은 지난 6월 11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금번 회기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3차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을 총괄하여 보면, '99회계연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9,022억 5,100만원,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은 각각 9,025억 700만원과 7,838억 6,300만원으로 1,186억 4,4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결산내역을 세입·세출, 이월비, 예비비, 채권 및 채무, 재산, 금고의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총 9,025억 3,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025억 700만원이 수납되었고, 2,200만원이 불납결손, 200만원이 미수납 처리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00.2%, 징수결정액대비 9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여 본 바, 의존수입이 6,968억 3,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의 77.2%나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은 2,056억 7,100만원으로 2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7,838억 6,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9%가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97억 9,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5% 정도이며, 불용액

은 685억 9,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입니다.

이월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청, 지역교육청, 교육지원기관에서 발생하였는데, 이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83.3%로 거의 대부분이 시설공사라 할 수 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7.6%로 '99년도 7.2%와 비슷한 수준이며, 불용액의 대부분이 예비비와 초·중·고등학교 시설확충비입니다.

다음 이월비 결산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비는 명시이월 32건에 277억 6,600만원, 사고이월이 67건에 220억 2,800만원, 총 99건에 497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8건이 증가하고, 금액으로는 65억 8,2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제천 유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생 교통사고구상금 지급액 2,800만원으로 금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99년도 말 236억 9,200만원에서 2000년도 중 69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고, 39억 4,000만원이 소멸되어 2000년도 말 현재액은 267억 200만원으로 채권액의 대부분은 공무원자녀 대

여장학금입니다.

채무는 '99년도 말 749억 7,800만원에서 2000년도 중에 371억 200만원이 발생하고, 150억원이 소멸되어 2000년도 말 현재액은 970억 8,000만원으로 채무의 대부분은 교원 명예퇴직수당, 학교통·폐합 지원 및 학교 시설비를 충당하기 위해 기채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2000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1,143억 3,700만원이 증가된 1조 7,862억 2,000만원이며, 물품의 2000년도 말 현재액은 1만 3,365점에 705억 4,100만원으로 '99년도 말 현재액 1만 1,468점에 615억 2,500만원에 비하여 2000년도 중에 2,395점 115억 400만원의 증가와 498점에 24억 8,800만원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다음 금고의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누계액은 총 수입이 9,025억 700만원이고 총 지출이 7,838억 6,300만원인데, 차입잔액이 1,186억 4,400만원으로 차입잔액 모두가 결산 전에 다음연도의 세입으로 이입되었습니다.

이는 금고발행 세입·세출 누계액 증명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등 각 분야별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제규정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29회-제2차 본회의]

다만,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복지비, 수용시설비, 사학지원비, 결식아동중식비 등에 있어서는 더욱 세심한 집행이 요망됩니다.

소요예산 편성 시에도 합리적이고 적절한 판단을 통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비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발주 지연 등 업무처리 소홀로 인하여 익년도로 이월되거나 공사기간이 경과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 조 :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별첨 9)  
(끝에 실음)

다음은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 주요 내용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천 유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 교통사고구상금 청구소송 1심 판결 확정에 따른 구상금 2,846만 8,890원을 지출한 것으로, 향후 학생을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운전자 안전운행 교육등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참 조 :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별첨 10)  
(끝에 실음)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을 의결하였으며, 소수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원안대로 승인을 의결하였으며, 역시 소수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계에서도 그 동안 소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이상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두 안건은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한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  
으셨습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  
여 이의 없으십니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29회 충  
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  
다.

(11시 24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안응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시설과장 오형균.

## ※ 부 록

- ▶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7)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8)
- ▶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별첨 9)
- ▶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별첨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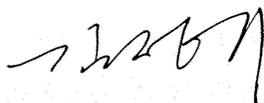
제1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1. 7. .

의 장 손 만 재 

위 원 이 기 수 

위 원 이 상 일 

의사국장 김 성 기 

# 議 事 日 程 (案)

第129회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1. 6. 20. ~ 6. 23.( 4 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6月 20日(水) (11:00)	<input type="checkbox"/> 開 會 式  [ 第1次 本會議 ] 1. 제129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 기 : 2001. 6. 20. ~ 6. 23.( 4 일간) 2.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제안설명) 5.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안설명) 6.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안설명) 7.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8.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 조례심사소위원회 • 예산·결산소위원회	
6月 21日 ~ 6月 22日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 조례심사소위원회 • 예산·결산소위원회	本會議 休會
6月 23日(土) (11:00)	[ 第2次 本會議 ] 1.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4.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input type="checkbox"/> 閉 會	



(별첨 2)

의안번호	제 129-1호
의 결 년 월 일	2001. . . (제 129 회)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1. 6. 11.

#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29-1
----------	-------

제출년월일 : 2001. 6. 11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제안이유

-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며,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 주요골자

-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입안시 입법예고 실시(제3조).
  1. 학사제도
  2. 공중위생
  3. 환경보전
  4. 행정심판
  5. 지방시협
  6. 정보화관련제도
  7. 기타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 입법예고의 예외(안 제4조).
- 입법예고문 작성 및 입법예고 방법(안 제5조 및 제6조).
- 의견제출 및 처리(안 제9조).
- 공청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 제정근거

- 행정절차법 제41조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제정조례안 : 불 입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발췌서

#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도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자치법규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교육규칙을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1. 학사제도
2. 공중위생
3. 환경보전
4. 행정심판
5. 지방시험
6. 정보화관련제도
7. 기타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제4조(입법예고의 예외)** 입법예고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예고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5조(입법예고문의 작성)** 입법예고문은 별지서식에 의거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방법,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방법)** ①교육감은 입법예고문을 충청북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도보외에도 신문, 방송,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충청북도 교육청 회보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문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협의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제출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입법예고와 병행할 수 있다.

**제8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입법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열람 및 복사)** ①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다.

**제11조(공청회)** ①교육감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지 방법으로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시에 미리 공고한 때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공청회의 주재자는 당해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사무관 이상의 공무원 또는 당해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⑤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예고사항의 확대 실시)** 제3조의 입법예고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입법안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치법규의입법예고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 호

○○○조례(규칙)를 제정(또는 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감

1. 조례(규칙)명 :
2. 제정(또는 개정·폐지) 취지 또는 이유

3. 주요내용

가.

나.

다.

4.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A4용지를 세로 작성한 것)를 충청북도교육감(참조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5. 공청회 개최 계획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일 시 :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나. 장 소 : ○○○

다. 공청사항 : 1)

2)

3)

라. 발언자수 : ○○인

마. 발언신청 :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일 당일 의견을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충청북교육  
감(참조 :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및 자신의 이력을 적  
은 자기소개서(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발언 신청하는 경우에  
는 그 단체명, 단체에서의 직위를 포함한다)

※ 필요한 경우 입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 행정절차법 (법률 제5241호 1996. 12. 31.)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③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법제업무운영규정 (대통령령 제14748호 1995. 8. 10.)

**제20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별첨 3)

의안번호	제 129-2 호
의 결	2001. 6. 23 .
년 월 일	(제 129 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1. 6. 11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9-2

제출년월일: 2001. 6. 11.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공공시설 위탁관리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에게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재산 심의범위 확대 및 행정사무 간소화 (안 제7조).
  - 공유재산심의범위 확대
    - 필요할 경우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확정 심의
  - 공유재산 심의 생략 규모 조문 정리
    -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및 대장가 1천만원 이하재산의 취득·처분,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한 각종사용료, 임대료율의 탄력적 적용 (안 제23조).
  - 일반 재산평가액의 5% → 5% 이상
  - 공공용 재산평가액의 2.5% → 2.5%이상
  - 경작용 재산평가액의 1% → 1% 이상 등으로 정함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집중지역 분산효과(안 제23.조).
-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 지방 이전시 대부요율 인하
  - 재산평가액의 5% → 1%이상

○ 전세권 조항 신설 (안 제25조의2).

□ 개정조례안 : 불임

□ 참고 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불임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①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및 납부방법등을 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심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제4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일반시지역은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나. 군지역은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제11조제1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및 제1항·제2항중 “사용허가”를 각각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재산”을 각각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중 “사용허가”를 각각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및 본문중 “사용허가부”를 “사용·수익허가부”로 한다.

제20조의3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제22조제1항제4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의 제목중 “대부료 및 사용요율”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로 하고, 동조제1항중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이상”으로, “공용,공공용”을 “공용·공공용”으로,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대부의”를 삭제하며, “1000분의 50” 다음에 “이상으로 한다”를 삽입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대부의”를 삭제하며, “100분의1”을 “1000분의10이상”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1000분의 40”을 “1000분의 40이상”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동조제10항중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폐교재산의”로 하며, 동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교육감이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 하는 때
2.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3조의2제2항 및 동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3의 본문중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으로 한다.

제25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2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으로(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중 “한다”를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8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중“다음의”를 “다음”으로 하고, 동항제3호의 “토지의 면적”을 “토지면적”으로 하며,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등 잔여면적도 포함)”을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으로 하고, 단서부분중 “매각”을 “분할매각”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4조의2(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①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5조(중요재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중 영제81조제2항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재산으로 한다.</p>	<p>제5조(중요재산) --- --- --- --- ---</p>
<p>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의거 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은닉된 소관의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 2.(생략) ② ~ ③(생략)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2. 재산관리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 ⑤~⑥(생략)</p>	<p>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법--- --- --- --- --- --- --- --- --- --- 1. ~ 2.(현행과 같음) ② ~ ③(현행과 같음) ④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⑤~⑥(현행과 같음)</p>
<p>제7조(공유재산심의회) ①~③(생략) ④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2. &lt;삭제 2000. 7.28&gt;</p>	<p>제7조(공유재산심의회)①~③(현행과 같음) ④ 심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p> <p>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p>

현행	개정안
<p>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⑤(생략)</p> <p>⑥제4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lt;신설 2000. 7.28&gt;</p> <p>제11조(관리 및 처분) ①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교육용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②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p>	<p>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p> <p>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⑤(현행과 같음)</p> <p>⑥제4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p> <p>2.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p> <p>3.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p> <p>가.일반시지역은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p> <p>나.군지역은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p> <p>제11조(관리 및 처분) ①----- -----행정재산·보존재산(교육용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p> <p>② &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직할시이상 지역 : 3백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2. 일반시지역 : 6백제곱미터이하 토지</p> <p>3. 군지역 : 9백제곱미터이하 토지</p> <p>4. 시가 3백만원이하의 기타재산</p>	<p>③ &lt;삭제&gt;</p>
<p>④(생략)</p> <p>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p> <p>②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생략)</p> <p>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p> <p>3. (생략)</p>	<p>④(현행과 같음)</p> <p>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 -----사용·수익허가 -----, ----- ----- ----- -----</p> <p>②행정재산·보존재산 ----- -----사용·수익허가-----</p> <p>1. (현행과 같음)</p> <p>2. &lt;삭제&gt;</p> <p>3. (현행과 같음)</p>
<p>제13조(사용허가 기간) ①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1개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3조(사용·수익허가 기간)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사용·수익허가 ----- ----- -----</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b>제14조(사용허가 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6.(생략)</li> <li>7. <u>사용허가재산의 보존의무</u></li> <li>8. <u>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u></li> </ol>	<p><b>제14조(사용·수익허가 조건)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b></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6.(현행과 같음)</li> <li>7. <u>사용·수익허가-----</u></li> <li>8. <u>사용·수익허가 -----</u></li> </ol> <p>-----</p>
<p><b>제15조(사용허가부의 비치) 공유재산관리담당공무원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u>사용허가부</u>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b></p>	<p><b>제15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b></p> <p>-----</p> <p>-----<u>사용·수익허가부</u>-----</p> <p>-----</p>
<p><b>제20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생략)</li> <li>4. <u>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 지역내의 공유재산</u></li> <li>5. ~ 6.(생략)</li> </ol>	<p><b>제20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 등) -----</b></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현행과 같음)</li> <li>4.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u></li> <li>5. ~ 6.(현행과 같음)</li> </ol>
<p><b>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생략)</li> <li>4. <u>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lt;신설 2000.7.28&gt;</u></li> </ol> <p>② ~ ③(생략)</p>	<p><b>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b></p> <p>-----</p> <p>-----</p> <p>-----</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현행과 같음)</li> <li>4.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u></li> </ol> <p>-----</p> <p>② ~ ③(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li> <li>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li> <li>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li> <li>4.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li> </ol>	<p>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23조(대부료 및 사용요금)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를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으로 한다.</p> <p>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또는 사용료는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p> <p>③(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 한다.</li> </ol>	<p>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1000분의 25이상-----.</p> <p>②-----1000분의 10이상-----.</p> <p>③(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 -----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li> </ol>

현행	개정안
<p>2.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분의 1</p> <p>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p> <p>1. ~ 2.(생략)</p> <p>⑤(생략)</p> <p>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p> <p>⑦ ~ ⑨(생략)</p> <p>⑩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요율은 당해 폐교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p>	<p>2.----- (삭제)-----</p> <p>----- 1000분의 10이상 -----</p> <p>④-----</p> <p>-----</p> <p>-----1000분의 40이상-----.</p> <p>1. ~ 2.(현행과 같음)</p> <p>⑤(현행과 같음)</p> <p>⑥-----</p> <p>-----1000분의 25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1000분의 10이상 ----.</p> <p>⑦ ~ ⑨(현행과 같음)</p> <p>⑩폐교재산의-----</p> <p>-----</p> <p>-----</p>
<p>&lt;신설&gt;</p>	<p>⑪교육감이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p> <p>1.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p> <p>2.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지역으로서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p>

현행	개정안
<p>제2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생략)</p> <p>②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p> <p>③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 받는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p>	<p>제2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현행과 같음)</p> <p>② &lt;삭제&gt;</p> <p>③ &lt;삭제&gt;</p>
<p>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 3.(생략)</p>	<p>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p> <p>1. ~ 3.(현행과 같음)</p>
<p>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lt;개정 2000.7.28&gt;</p> <p>1. ~ 6.(생략)</p> <p>&lt;신설&gt;</p>	<p>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①-----</p> <p>-----</p> <p>-----</p> <p>1. ~ 6.(현행과 같음)</p> <p>②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p>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용 사용면적으로(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누는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p> <p><b>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b> ①영 제10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li> <li>2.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유리한 때</li> <li>2.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li> <li>3.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li> </ol> <p>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p>



현행	개정안
<p>②(생략)  <u>&lt;신설&gt;</u></p>	<p>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28조의2(변상금의 청문등)</b>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36조(수의계약 매각 범위등)</b> ① ~②(생략)</p> <p>③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p> <p>1. ~ 2.(생략)</p> <p>3.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p>	<p><b>제36조(수의계약 매각 범위등)</b> ① ~②(현행과 같음)</p> <p>③-----  -----  -----다음-----  1. ~ 2.(현행과 같음)  3.-----토지면적-----  -----  -----  -----</p>



## 관계법령발췌서

### ■ 지방자치법

#### 제135조 (공공시설)

-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15조의3 (중요재산 · 공공시설의 취득 · 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5.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7.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회계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 · 처분
  8.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 ·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 · 처분

### ■ 지방재정법

#### 제88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9조(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74조 (세입세출외현금등의 금고보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사무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따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이를 취급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금고에 보관시켜야 한다. 다만,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7조 (공유재산의 범위)

①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30>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 부잔교 ·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 · 지역권 ·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5. 저작권 · 특허권 · 의장권 · 상표권 ·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 · 지방채증권 · 국채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7.16>

1. 기관차 · 전차 · 객차 · 화차 · 기동차등의 궤도차량
2.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계와 기구

#### 제78조 (공유재산의 종류)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1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재산을 말하며, 제1항제4호에서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거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0.10.20>

####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95.5.16, 96.4.27, 98.7.16, 2000.10.20>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95.5.16, 2000.10.20>

1.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손실보상 또는 환매
5.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8. 지방의회의결을 얻은 후 2회계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1.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④ 제2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95.5.16>

1. 동일한 취득 · 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의 토지를 함께 취득 · 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 · 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 목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 · 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 제84조의2 (행정재산 등의 사용 · 수익허가 및 전대)

- ①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 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관리위탁된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 · 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용 · 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0.20]

#### 제88조 (잡종재산의 대부)

- ①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익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0.11.6, 94.9.29, 98.7.16, 99.4.30, 2000.10.20>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법인 ·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2.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때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4. 임야를 목축 · 광업 · 채석등의 목적으로 대부할 때
5. 삭제 <94.9.29>
6.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대부할 때
7.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할 때

8.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할 때
9. 삭제 <2000.10.20>
1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11.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 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때
1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당해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때
13. 재산평가액이 1천만원(특별시 · 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때
14. 2회에 걸쳐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15. 당해 시 · 도, 시 · 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 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때
1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대부하는 때

#### 제92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개정 90.11.6, 99.4.3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격결정은 사용 · 수익허가기간중 연도마다 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산의 가격은 결정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0.11.6, 93.9.23, 94.12.23 대령14447, 96.6.29, 98.7.16, 99.4.30, 2000.10.20>
  1.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토지와 경계를 접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동일필지로서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된 지가를 개별공시지가에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면적으로 그 사용 · 수익을 허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삭제 <99.4.30>

**제92조의2 (대부료 등의 감면)**

①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9.4.30>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아 외국인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 농공단지의 공유재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대부료 감면대상지역의 범위를 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② 천재 ·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기간동안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99.4.30> [본조신설 98.7.16]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①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신설 90.11.6, 2000.10.20>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2항 각호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3. 기타 규모 · 형상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때

②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90.8.8, 90.11.6, 93.9.23, 94.9.29, 98.7.16, 99.4.30, 2000.7.1, 2000.10.20>

25. 재산의 위치 · 형태 · 용도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

**제100조 (대금납부와 연납)**

①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9.29>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9.29, 98.7.16, 99.4.30, 2000.10.20>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 연립주택 ·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
2. 전원개발 ·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3. 천재 ·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하는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제100조의3 (잡종재산 등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 · 형태 · 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0.10.20>

### 제100조의5 (대부료 · 사용료 · 매각대금의 체감)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 또는 사용을 위한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3회차입찰부터 최초 대부료 또는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하한으로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을 하한으로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본조 신설 2000.10.20]

### 제105조 (변상금)

-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 · 수익한 기간의 회계연도별로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1.6, 94.9.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8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7조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에 대한 특례)

①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한 자에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자진반환 또는 제소전 화해의 경우에는 12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8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2. 제1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10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7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3. 항소 제기전의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8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6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6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5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5. 상고 제기전의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4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4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2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3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 ② 제1항의 자진반환의 경우의 그 반환일은 반환하고자 하는 은닉재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조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② 연간 대부료율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건축법

###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

-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99.2.8 법5895>
-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33조 · 제47조 · 제48조 ·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95.1.5, 99.2.8 법5895>

## ▣ 건축법시행령

###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전문개정 99.4.30]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9.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 ·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0.1]]

##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 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6.6.4, 98.2.20, 2000.3.28>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하되,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공공청사(도서관 · 전시장 · 공연장 및 군사시설중 군부대의 청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개정 2001.1.5>
  -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01.1.5>
  - 나.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공공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소(연구소 및 연수시설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 (2)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 (4)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 ·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연수시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지가 연결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 ■ 외국인투자촉진법

###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 개발)

-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이하 "지방산업단지"라 한다)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별첨 4)

의안번호	제 129-3 호
의 결 년 월 일	2001. . . ( 제 129 회 )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1. 6 . 11 .

#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129-3
----------	-------

제출년월일 : 2001. 6.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사유

-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공유재산의 취득

- 도서관 및 기숙사(기부채납)      충북고      1,898.61㎡

## 제안근거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 : 덧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설명자료 : 별책

#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서

##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7-1)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m<sup>2</sup>/m,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건물	1	1,898.61	1,086,000			1	1,898.61	1,086,000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취득	토지									
	건물	1	1,898.61	1,086,000			1	1,898.61	1,086,000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기 타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 취득대상 재산목록(7-2)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주소·성명	비고
	기 관 명	구 분	소 재 지	수 량					
1	충 북 고	건 물	청주시 분평동 233, 380-5	1,898.61	1,086,000	상반기	기부채납	교육감	
계	1 기관			1,898.61	1,086,000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또는 환매
5.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8.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2회계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 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1.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77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제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제 1 항 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 의결로 본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공유재산관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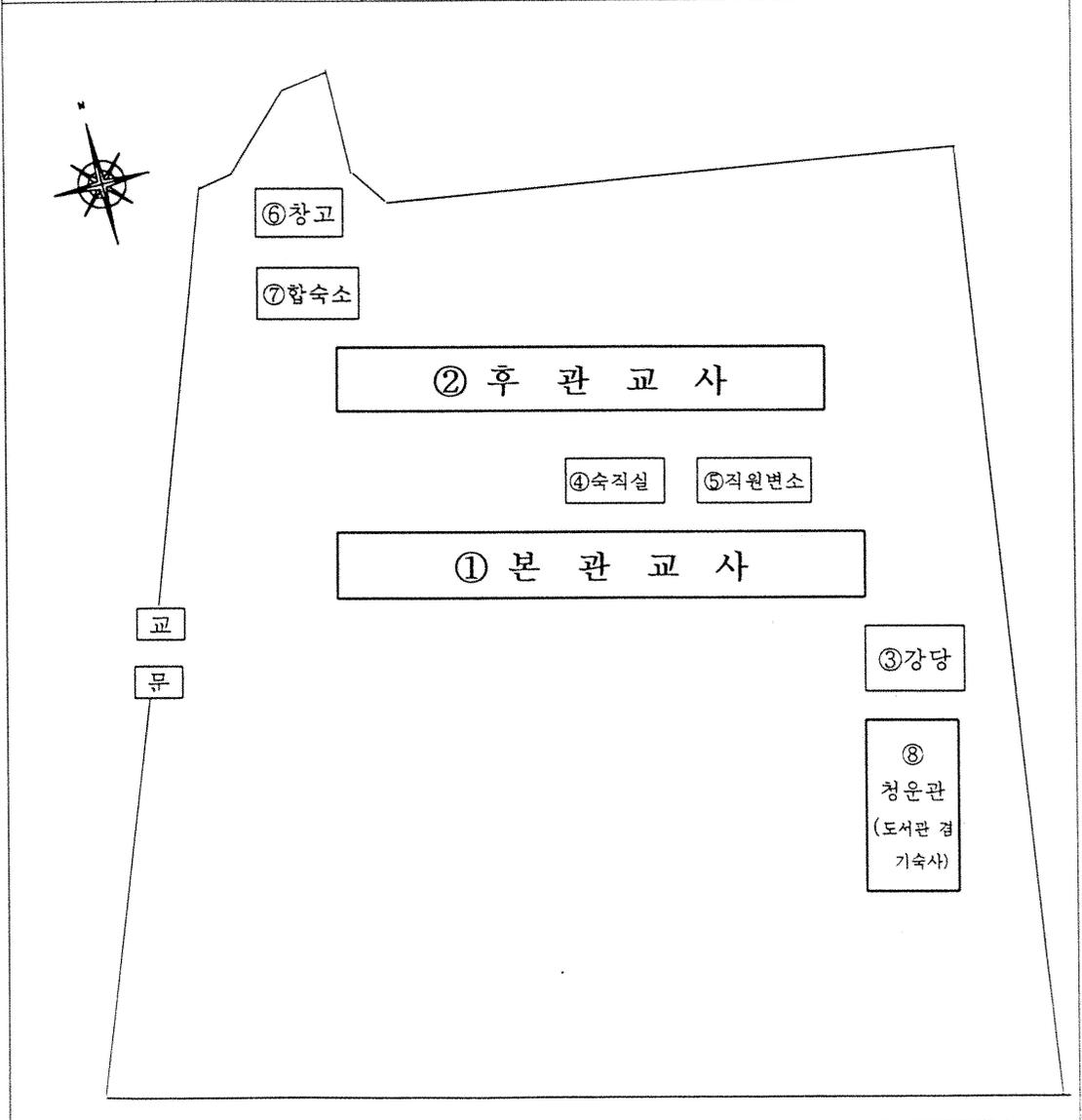
제34 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교육감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설 명 자 료

## 충북고등학교 건물취득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m <sup>2</sup> )	금액(천원)	사유
도서관 및 기숙사	청주시 분평동	233, 380-5	철콘슬	1,898.61	1,086,000	기부채납



## 충북고등학교 기부재산 현황

### ○ 기부목적

우수학생 유치 및 후배양성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함

### ○ 기부재산 현황

- 건평 : 1,898.61 m<sup>2</sup> (지하 1층, 지상 3층)
- 기숙사 규모 (3층)
  - 2인 1실 사용하여 100명까지 수용
- 도서관 규모 (2층)
  - 1층 : 전자도서관 2실, 서고 및 열람실 1실 (일반교실 3실규모)  
서버검색용 PC 40대, 빔 프로젝터 및 스크린 시설
  - 2층 : 정독실 (일반교실 3실 규모)
- 기 타 : 지하 1 층 ( 보일러 및 장비실, 비트)

### ○ 기부자 인적 사항

- 성 명 : 신 동주 ( 동교 2회 졸업생)
- 생년월일 : 1958. 7. 22 (43세)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652 우성3차 A 1-1305
- 직 업 : (주) 한아시스템 대표이사



(별첨 5)

의안번호	제 129-4호
의결년월일	2001. . . (제 129 회)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1. 6. // .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안 번호	129-4
----------	-------

제출년월일 : 2001. 6. 〃 .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작성한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2000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중 세입결산액은 902,507,426,740원, 세출결산액은 783,863,336,370원이며, 이월사업비는 49,794,056,62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8,782,664,750원, 국고보조금잔액은 67,369,000원으로서 총 118,644,090,37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함.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 따로붙임.

### 참고사항

○ 2000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 따로붙임.

○ 2000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지침 : 따로붙임.

의안번호	제 129-5 호
의 결	2001. 6. .
년 월 일	(제 129 회)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1. 6. " .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129-5
------	-------

제출년월일 : 2001. 6. ㄴ.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과

제안이유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 지 출 건 수 : 1건
- 지출결정액 : 28,469,000원
- 지 출 액 : 28,468,890원
- 잔 액 : 110원
- 지출사항
  - 유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생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1심판결 확정에 따른 구상금 28,468,890원

예비비지출내역

(단위:원)

건 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구상금 지급	2000. 2. 17.	28,469,000	28,468,890	110	현대해상화재보험(주)
계		28,469,000	28,468,890	110	

예비비사용명세서 : 별첨

## 2000. 예비비 사용 명세서

(단위:원)

과 목						예 비 비	예 비 비	잔 액	비 고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지출결정액	사 용 액		
교육	교육청	교육청	법무	경 상	배상금	28,469,000	28,468,890	110	
행정	교육청	운 영	관 리	사 업 비					
합 계						28,469,000	28,468,890	110	

□ 예비비지출 사유

- 유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생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1심 판결 확정에 따른 구상금
  - 1998. 9. 8. 16:05경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유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생 이재진(남, 6세)어린이가 학교통학버스에서 하차하여 도로를 횡단하다 학교통학버스를 추월하여 달리던 승용차에 받혀 1998. 9. 18. 사망한 사건으로,
  - 본 사고차량은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보험회사에서는 이재진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98,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재진의 치료비와 변호사비 10,306,180원을 지급하였음
  - 이에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에서는 사고 당시 학교통학버스에 어린이의 하차 및 도로 횡단 등을 보살피 줄 교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채 학교통학버스를 운행한 과실과 교사가 별도로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버스 운전사가 그 임무를 보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이재진의 하차 및 도로횡단을 보살피주지 않은 과실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용차와 학교통학버스의 책임 분담비율은 3 : 1의 판결로 보험회사에서는 병설유치원 설치·감독자인 충청북도교육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 교육청에서는 보험회사측이 이재진 부모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치료비, 변호사비 등 총액의 1/4인 27,076,540원과 지연이자 및 수수료 1,392,350원 등 28,468,890원을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에 구상금으로 지급하였음



(별첨 7)

(제129회 임시회)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2001. 6. 2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6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20일

다. 상정일자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1년 6월 20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1년 6월 22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상길)

가. 제안사유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며,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입안시  
입법예고 실시(안 제3조)
  1. 학사제도
  2. 공중위생
  3. 환경보전
  4. 행정심판
  5. 지방시험

6. 정보화관련제도

7. 기타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 입법예고의 예외(안 제4조)
- 입법예고문 작성 및 입법예고 방법(안 제5조 및 제6조)
- 의견제출 및 처리(안 제9조)
- 공청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입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타당하고, 규정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참석 5명, 찬성 5명)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1. 6. 23.

조례심사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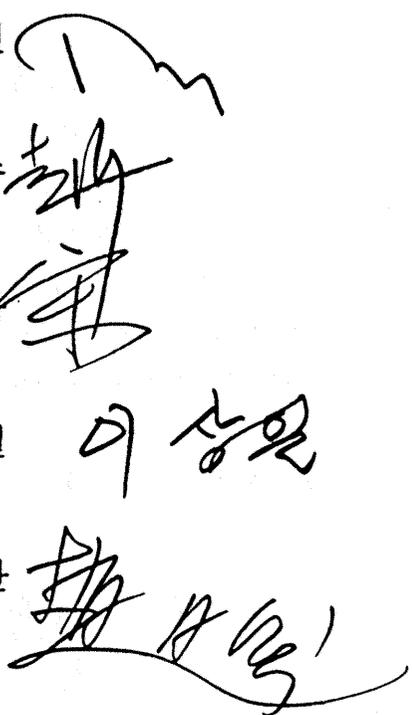
위원장 이 충 원

간사 이 기 수

위원 송 진 하

이상 일

조 일 환



The image shows five handwritten signatures in black ink, corresponding to the names listed to their left. The signatures are written in a cursive, somewhat stylized Korean calligraphic style. The first signature is for '이충원', the second for '이기수', the third for '송진하', the fourth for '이상일', and the fifth for '조일환'. Each signature is positioned to the right of its respective name, with some overlapping between the names and the start of the signatures.

(별첨 8)

(제129회 임시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2001. 6. 2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6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20일

다. 상정일자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1년 6월 20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1년 6월 22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가. 제안사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공시설 위탁관리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에게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재산 심의범위 확대 및 행정사무 간소화(안 제7조)
  - 공유재산 심의범위 확대
    - 필요할 경우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확정 심의
  - 공유재산 심의 생략 규모 조문 정리
    -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및 대장가 1천만원 이하재산의 취득·처분, 용도폐지·변경

○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한 각종사용료, 임대요율의 탄력적 적용(안 제23조)

- 일반 재산평가액의 5% → 5%이상
- 공공용 재산평가액의 2.5% → 2.5%이상
- 경작용 재산평가액의 1% → 1%이상 등으로 정함.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도 위탁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유재산의 심의범위를 확대하여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을 심의 대상으로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사무 간소화를 위해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및 대장가 1천만원 이하재산의 취득·처분, 용도폐지·변경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하여 각종 재산의 사용요율과 임대요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참석 5명, 찬성 5명)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1. 6. 23.

조례심사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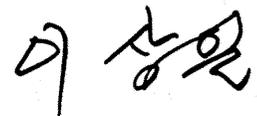
위원장 이 충 원

간사 이 기 수

위원 송 진 하

이상일

조일환



(별첨 9)

(제129회 임시회)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

## 심 사 보 고 서 (안)

2000. 6. 2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 심 사 보 고 서 (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6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20일

다. 상정일자

○ 제1차 소위원회(2001년 6월 20일)

○ 제2차 소위원회(2001년 6월 21일)

○ 제3차 소위원회(2001년 6월 22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2000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중 세입결산액은 902,507,426천원, 세출결산액은 783,863,336천원이며,

○ 이월사업비는 49,794,057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8,782,665천원, 국고보조금잔액은 67,369천원으로써 총 118,644,090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됨.

## 3. 충청북도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

: [결산검사 의견서] 따로 붙임.

4.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5.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보고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천원)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859,039,098	902,251,426	902,507,426	783,863,336	118,644,090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902,251,426천원('99.이월 사업비 43,212,328천원 포함) 이며,

○ 세입결산액은 902,507,426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0.02% 수납되었으며,

○ 세출결산액은 783,863,336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6.9%를 집행하였고,

○ 세계잉여금이 118,644,090천원이 발생되어 이중 49,794,056천원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68,850,034천원은 다음년도 세입으로 이입되었음.

- 순세계잉여금 : 68,850,034천원(국고보조금 잔액 포함)
- 명사이월사업비 : 27,765,730천원
- 사고이월사업비 : 22,028,326천원

나. 세입결산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정수율	정수결정액 대비 정수율
902,251,426	902,531,118	902,507,426	21,605	2,087	100.02%	99.9%

2000년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총 902,531,118천원을 정수결정하여 902,507,426천원이 수납되고 21,605천원의 불납결손과 2,087천원이 미수납 처리됨으로써 예산현액대비 100.02%, 정수결정액 대비 99.9%의 정수율을 보이고 있는 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 의존수입 696,836,312천원(77.2%)
- 자체수입 205,671,114천원(22.8%)으로,

전년도 대비 재정자립도에 있어 자체수입의 비율이 5.3% 낮아졌음.

다. 세출결산

(단위 : 천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율	불용율
859,039,098	43,212,328	902,251,426	783,863,336	49,794,057	68,594,033	86.9%	7.6%

2000년도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783,863,336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6.9% 집행되었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49,794,057천원으로 예산현액의 5.5%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68,594,033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6%인데,

○ 지출액 783,863,336천원의 내용을 관별로 살펴보면,

- 유치원 3,283,145천원(0.4%)
- 초등학교 120,727,835천원(15.40%)
- 중학교 78,399,822천원(10.0%)
- 고등학교 68,737,812천원(8.8%)
- 특수학교 8,800,867천원(1.1%)
- 기타학교 27,321천원(0.0%)
- 평생교육 1,553,996천원(0.2%)
- 급여관리 410,853,177천원(52.4%)
- 복지후생 55,789,663천원(7.1%)
- 교육위원회비 339,718천원(0.0%)
- 교육청 6,787,086천원(0.9%)
- 지역교육청 4,032,417천원(0.5%)
- 교육지원기관 4,335,043천원(0.6%)
- 지방채상환 20,192,907천원(2.6%)
- 제지출경비 2,527천원(0.0%)으로,

○ 다음년도 이월액 49,794,057천원의 관별 내용은,

- 초등학교 18,761,983천원(37.7%)
- 중학교 12,107,680천원(24.3%)
- 고등학교 10,610,268천원(21.3%)
- 교육청 359,757천원(0.7%)

- 지역교육청 485,693천원(1.0%)
  - 교육지원기관 7,468,676천원(15.0%)으로
-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시설공사임.

○ 불용액 68,594,033천원의 관별 내용은,

- 유 치 원 213,529천원(0.3%)
- 초등학교 8,289,618천원(12.1%)
- 중 학 교 5,937,528천원(8.7%)
- 고등학교 7,818,082천원(11.4%)
- 특수학교 596,769천원(0.9%)
- 평생교육 32,372천원(0.0%)
- 급여관리 2,891,649천원(4.2%)
- 복지·후생 174,350천원(0.2%)
- 교육위원회 9,822천원(0.0%)
- 교 육 청 770,349천원(1.1%)
- 지역교육청 451,638천원(0.7%)
- 교육지원기관 381,021천원(0.5%)
- 지방채상환 1,328,943천원(2.0%)
- 제지출경비 1천원(0.0%)
- 예 비 비 39,698,362천원(57.9%)으로써

예산현액에 대한 총 불용비율이 7.6%로 '99년도 7.2%와는 비슷한 수준이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비비와 초·중·고등학교 시설확충비임.

#### 라. 이월비 결산

(단위 : 천원)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계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32	27,765,730	67	22,028,327	0	0	99	49,794,057	

2000년도 이월비는 명시이월 32건에 27,765,730천원, 사고이월 67건에 22,028,326천원, 총 99건에 49,794,057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8건이 증가하고 금액으로는 6,581,740천원이 증가하였음.

#### 마. 예비비 결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비 비 지출결정액	예 비 비 지 출 액	지출결정일	비 고
배 상 금	28,469	28,469	2000. 2. 17	
계	28,469	28,469	2000. 2. 17	

위 건의 예비비 지출은 재천 유턱초 병설유치원생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이 1심 판결 확정에 따른 구상금 지급액으로 금회 제129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관련임.

바.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채 권

(단위 :천원)

종 류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년도중 발 생 액	당해년도중 소 멸 액	당해년도말 현 재 액	비 고
대지료	1,563	698	1,563	698	임대료 미납금
대가료	9,616	1,389	9,616	1,389	임대료 미납금
수업료	27,802	0	0	27,802	세입금 횡령
잡수입	8,202	0	8,202	0	공무상 요양비
폐교재산 매각분납금	192,000	868,797	465,942	594,855	재산매각대 분납금
임대차전세금	242,000	160,000	146,000	256,000	원어민 전세금외1
대여장학금	23,211,283	5,919,540	3,309,509	25,821,314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
계	23,692,466	6,950,424	3,940,832	26,702,058	

채권은 '99년도말 23,692,466천원에서 2000년도중에 6,950,424천원이 발생하고 3,940,832천원이 소멸되어 2000년도말 현재액은 26,702,058천원으로 채권액의 대부분(96.7%) 이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임.

○채 무

(단위 :천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년도중 증 감 액		당해년도말 현 재 액	기한도래 미지급 이자	비 고
		채무발생액	상환·소멸액			
차입금	74,978,000	37,102,000	15,000,000	97,080,000	0	재 특 80,352,000 금융채 16,728,000

채무는 '99년도말 74,978,000천원에서 2000년도중에 37,102,000천원이 발생하고 15,000,000천원이 소멸되어 2000년도말 현재액은 97,080,000천원으로 교원 명예퇴직수당, 소규모학교 통폐합지원, 학교시설비를 충당하기 위해 기재한 것임.

사. 재산의 결산

○공유재산

(단위 : 천원)

구분 재산별	'99년도말 현재액	2000년도 증 감		2000년도말 현재액	비 고
		증	감		
합 계	1,671,883,131	383,999,086	269,662,110	1,786,220,107	
행정재산	1,646,295,447	313,967,352	212,601,893	1,747,660,906	
잡종재산	25,587,684	70,031,734	57,060,217	38,559,201	

공유재산의 2000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114,336,976천원이 증가된 1,786,220,107천원으로 이를 구분하여 보면,

- 행정재산의 '99년도말 현재액은 1,646,295,447천원으로 2000년도에 313,967,352천원이 증가되고 212,601,893천원이 감소되어 2000년도말의 현재액은 1,747,660,906천원이고,
- 잡종재산의 '99년도말 현재액은 25,587,684천원으로, 2000년도에 70,031,734천원이 증가되고 57,060,216천원이 감소되어 2000년도말 현재액은 38,559,201천원임.

○물 품

(단위 : 천원)

'99년도말 현재액		2000년도 증 감				2000년도말 현재액	
		증		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11,468	61,524,635	2,395	11,503,784	498	2,487,636	13,365	70,540,783

물품의 2000년도말 현재액은 13,365점에 70,540,783천원으로, '99년도말 현재액 11,468점 61,524,635천원에 비하여 2000년도에 2,395점 11,503,784천원이 증가되고, 498점 2,487,636천원이 감소되었음.

아. 금고의 결산

(단위 : 천원)

총 수입	총 지출	차입잔액	비 고
902,507,426	783,863,336	118,644,090	○ 결산전 다음년도 세입 이입액은 118,644,090천원이며, 금고 예치금은 없음.

2000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누계액은 총 수입이 902,507,426천원이고 총 지출이 783,863,336천원이며, 차입잔액이 118,644,090천원으로 차입잔액 모두가 결산전에 다음년도의 세입으로 이입되었는데, 이는 금고발행 세입·세출 누계액 증명과 일치함.

#### 자. 종합의견

위와 같이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입·세출 결산, 이월비 결산 등 각 분야별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작성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요예산 편성 시에도 합리적이고 적절한 판단을 통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특히 학생복지비, 수용시설확충비, 사학지원비 및 결식아동중식비 등에 있어서는 더욱 세심한 집행이 요망됨.

그리고 시설사업비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발주 지연 등 업무처리 소홀로 인하여 익년도로 이월되거나, 공사기간이 경과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승인을 의결함(참석 5명, 찬성 5명)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1. 6. 23.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 상 일 이 상 일

간 사 송 진 하 송 진 하

위 원 이 기 수 이 기 수

이 충 원 이 충 원

조 일 환 조 일 환



(별첨 10)

(제129회 임시회)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 승인의견

## 심 사 보 고 서 (안)

2000. 6. 2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 승인의견 심 사 보 고 서 (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6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20일

다. 상정일자

○ 제1차 소위원회(2001년 6월 20일)

○ 제2차 소위원회(2001년 6월 21일)

○ 제3차 소위원회(2001년 6월 22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가. 제안이유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지출건수는 1건으로 유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생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1심판결 확정에 따른 구상금 28,468,890원임.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5. 심사보고 주요내용

### 가.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건 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구상금 지급	2000. 2. 17	28,469,000	28,468,890	110	

- 유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생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1심 판결 확정에 따른 구상금
  - 1998. 9. 8. 16:05경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유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 이재진어린이가 학교통학버스에서 하차하여 도로를 횡단하다 승용차에 받혀 1998. 9. 18. 사망한 사건으로
  - 사고운전차량 보험회사(현대해상보험)에서 사망어린이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98,000,000과 치료비 및 변호사비 10,306,180원을 지급하였음
  - 이에 현대해상보험회사에서는 학교통학버스 운전자가 하차 및 도로횡단을 보살피 주지 않은 과실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 승용차와 학교통학버스의 책임 분담비를 3 : 1의 판결로, 보험회사에서는 병설유치원 설치·감독자인 충청북도교육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 교육청에서는 보험회사측이 학생부모에게 지급한 총액의 1/4인 27,076,540원과 지연이자 및 수수료 1,392,350원 등 28,468,890원을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에 구상금으로 지급한 것임.

### 나. 종합의견

위와 같이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금번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에는 학생을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운전자 안전운행 교육 등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승인을 의결함(참석 5명, 찬성 5명)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1. 6. 23.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 상 일 이 상익

간 사 송 진 하 송진하

위 원 이 기 수 이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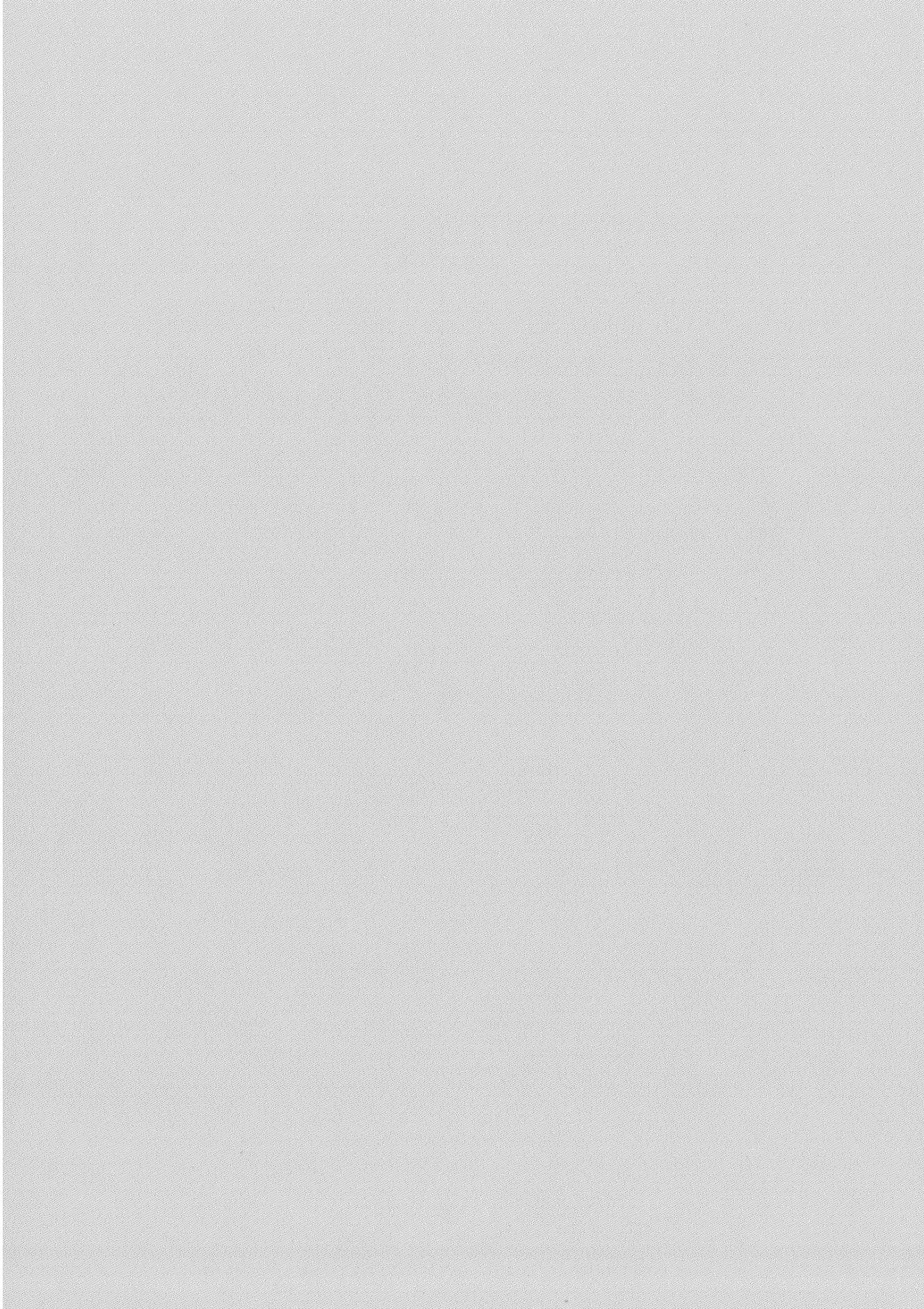
이 충 원 이충원

조 일 환 조일환

第12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제1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09

II. 제1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13

III.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 .....125



#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6월 20일 (수요일) 11시 34분

## 議事日程 (제129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34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승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  
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승진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함

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 하  
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 이기수 위원

이충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 위원장 직무대행 승진하

[제129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이충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충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충원

부족한 제가 위원장의 소임을 맡도록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출의건

(11시 35분)

● 위원장 이충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전과 같이 구두로 호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구 없으신가.

● 이상일 위원

이기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충원

이기수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었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이기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세요.

● 간사 이기수

위원장을 보필해서 조례심사소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게끔 잘 보필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38분)

● 위원장 이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위원장인 본인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나눠드린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 유인물이 있는데 본 소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6월 22일 이틀간 두차례에 걸쳐서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6월 22일 11시에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 부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9분 산회)

0 출석위원 : 4명

위원장 이충원, 간사 이기수,  
위원 송진하, 이상일.

0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6월 22일 (금요일) 10시 35분

## 議事日程 (제129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5분 개회)

### ● 위원장 이충원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김광수 위원님만 유고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일날 회부된 조례안건이 두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10시 38분)

### ● 위원장 이충원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 작성에 직접 관여하신 총무과장님의 아주 극히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저희가 듣겠습니다.

### ● 총무과장 신춘우

총무과장 신춘우입니다.

[제129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  
에관한조례안-본회의(별첨 2)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칠겠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매번 위원님들의 가나다 순, 좌석 순으로 했는데 어떠세요, 역순으로 하면 어떨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일환 위원님.

● 조일환 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저희들 사무국에서도 좀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타 시·도는 지금 어느정도 이계, 개정안이 어느정도...

● 의사과장 이상기

16개 시·도에서 한 반 정도가 아마 개정...

● 조일환 위원

반 정도가 되고, 개정내용은?

● 총무과장 신준우

제가 알아 왔습니다.

● 조일환 위원

이번 조례는 뭐 우리 상위법이 이것이 개정이 되고, 저는 늘 조례를 다루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법을 운용하는 주체, 그 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문제지, 우리 나라의 어떤 국회나 모든 기관에

서 법이 잘못돼서 잘못된 일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집행청에서 이렇게 법을 개정하고 조례를 바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그 정신을 살려서 항상 그 운용, 운용에서의 충실을 기하는 거, 저는 이것을 좀 부탁드리면서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별 제 질문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이상일 위원님.

● 이상일 위원

이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자치법규는 그저 개정하고 또 제정할 때 사전 예고하는 게 주 내용이죠, 그렇죠?

● 총무과장 신준우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주요 골자죠?

● 총무과장 신준우

예

● 이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 간사 이기수

이기수 위원입니다.

결국은 그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참 많은 이런 조례나 법규에 대해서는 사전 입법에

고 하는 제도인데 참 좋은 제도로 생각이 됩니다.

죽 1쪽부터 읽어봤는데 잘돼 있는 것 같고, 혹시 시행상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얘기니까,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 위원님.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일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항상 이런 조례를 접하다 보면은 행정에서 어느 측면에서 보면 너무 구체적인 제약에 얽매어서 행정의 재량권을 너무 제약하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거 조금 말씀드리고, 이번 조례는 상위 법령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별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 모두 “예”하고 말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7분)

● 위원장 이충원

두 번째 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께서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본회의(별첨 3)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충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까와 같이 역순으로 오늘 계속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일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 조일환 위원

제가 조금 더 질의 형식이고 설명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 중요 개정내용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도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면은 그것은 개인을 말하는 겁니까, 어느 법인이나 이런 단체를 말할 하는 겁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 단체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개인도 되는 겁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예, 개인도 되고.

● 조일환 위원

개인도 되고.

●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예

● 조일환 위원

그러면 이걸 뭐 그냥 이런 제안을 꼭 지방자치단체 이외라는 자구를 쓴 건 난 이유가 좀 있다고 본단 말이죠. 아무나라면 뭐 굳이 지방자치단체 이외, 이런 말을...

●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그것은 설명자료이고요, 조문에는 “법인, 단체, 개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자료에 보시면은 600㎡를 10% 확대를 했어요, 그렇죠?

●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예

● 조일환 위원

그리고 900을 990, 이거 뭐 10% 때문에 업무상에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동안에 이 임대하고 뭐 하는데, 승인받는데, 왜 10%가, 난 하면은 말이에요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이렇게 했는데, 뭐 10%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된 일이 그 동안에 법 적용상,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던가.

●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없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아, 하려면 말이에요 좀 넉넉하게 해 놓는다든가, 이게 말하자면 완화인데, 그렇죠? 완화를 해 주는 건데 재량권을 많이 주는 뜻 같은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하려면 한 1,000㎡, 1,500㎡ 좀 넓게 해 놓더라도 적용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꼭 우리가 10%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뭐 어디에 근거를 한 겁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그게 모법에...

● 조일환 위원

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예

● 조일환 위원

모법에 그렇게 돼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세 번째는 그게 5%에서

5% 이상, 그러니까 위로 수입을 증대를 위해서 이제 좀 범위를 넓혀 놓은 거죠?

●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예, 그렇습니다.

● 조일환 위원

5% 이상, 그러니까 무제한입니다. 이 밑에 없네요, 관계없죠.

●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예

● 조일환 위원

희망자만 있다면 하겠다, 이런 쪽이죠.

●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예

● 조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조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이상일 위원

이상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담당관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 위원님.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간사 이기수

이기수 위원입니다.

조일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 갖고서 이해가 됩니다만은 공유재산심의 생략 규모가, 모법 말씀을 하셔서 더할 얘기는 없겠지만은 이게 660, 990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모법은 어떻습니까? (청불)법에 따라서 하면 이걸 공유해서 바꿀 방법은 없습니까? 990, 660 이렇게 해 갖고 또 가액도 1,000만원 정도 소규모 가액인데, 물론, 적은 재산까지도 심의해 갖고 하면 더욱더 정확할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또 이게 참 적은 액수를 갖고서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하면 업무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어느 법에 따라서 이걸...

●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그 모법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이나 국유재산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형명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 간사 이기수

그 다음에 뭘니까, 마지막 설명에 4번, 지역경제활성화와 인구집중지역 분산효과, 수도권내 인구집중발생의 지방이전시 대부요율 인하, 그런데 그 5%에서 1%로 줄인 얘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하든지 하면 많은 업체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것 같이 이렇게 생각돼서 그렇게 한 겁니까. 5%에서 갑자기 1%, 평가액이 5%에서 개정한 게 1%로 되어 있는데.

●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이것도 모법에...

● 간사 이기수

모법에?

●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예, 지방재정법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모법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된 것입니다.

● 간사 이기수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더 할 얘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진하 위원님.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완화를 한 겁니까, 더 상향조정한 겁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몇 쪽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송진하 위원

30페이지. 그전보다 완화를 한 거예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이것은 참고법령을 거기다 해 놓은 겁니다.

30페이지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 송진하 위원

예

●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그것은 특별법시행령에는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조례에, 여기서 이것은 법이고, 법시행령, 이 조례는 1,000분의 30으로, 3%, , 지난해 조례 제정할 때 3%로 저희들은 조례에 정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현재 모법이...

● 송진하 위원

이렇게 되면 1,000분의 10인데 1,000분의 30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1,000분의 10 이상이니깐요, 조례에서 정하는...

● 송진하 위원

이게 하한으로 하는 거예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하한이죠, 하한, 이것은 하한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법에서.

조례에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1,000분의 30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 송진하 위원

1,000분의 30?

●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예, 3%, 3% 이상.

작년에 조례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도내에 폐교된 학교 중에는 효용가치가 있는 폐교는 희망자가 있어서 뭐 대부도 하고 또 구입도 하고 하는데, 그 어디 오지에 있거나 장소가 적절치 않은 그 분교는 지금 처리 곤란한 상태 아닙니까? 관리비만 지출하고.

●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현재는 그렇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는 그런 특별법이니까 그렇게 하한선을 묶지 말고 뭔가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재량권을 줘야 하는데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 소자본 가지고 살 수도 없고,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건물만 망가지고, 참말로 애물단지로 변했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1,000분의 10을 1,000분의 30으로 했으니까 더 완화가 안된 거죠. 그래서 그 건물만이라도 대부분은 하나도 안 받더라도 건물만이라도 누가 보수해서 쓸 사람이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묵혀 놓는 거 보다. 지금 건물이라는 것은 유용을 안하면 다 망가지게 마련인데, 그래서 그 실정과 지역에 맞는 그러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되겠고, 또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어떻게 할 거요, 아무도 앞으로 안사면 몇 년이고 관리비만 지불하는 겁니까? 어떻게 처분해야지.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 행정자들이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그런 융통성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폐교재산이 처분이 되고, 또 다소 활용도 되고요, 관리도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규정상 1,000분의 30, 3%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대개 입찰로써 2회까지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20% 범위내에서 경감해서, 이렇게 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상의 방법을 활용하면은 앞으로 더 임대가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 개정으로 해서 50개교가 넘었습니다, 폐교가.

그래서 3% 내리고 나서 29개교, 한 열댓교가 줄었습니다.

경기가 안좋으니까 조금 늘었는데 아마 앞으로는 거의 임대가 많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하여튼 잘 지은 건물, 그것이 우리가 임대료를 안받더라도 누군가가 국가사회를 위해서 활용한다면은 그것도 국가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기타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29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조례심사소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 조일환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이거 다음에 우리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 의사과장 이상기

아까 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아까 했어요?

● 총무과장 신춘우

예, 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조금 전에?

● 총무과장 신춘우

예, 결산과 같이 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제가 하나 좀 질문해도 될까요?

● 위원장 이충원

예, 하시오.

● 조일환 위원

이게 예비비로 지출할 거냐, 안할 거냐, 그것은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것이 우리 예

비비로 갈 거냐, 구상권을 청구할 때 어느 개인이 잘못된 거냐, 이것은 법에, 제가 주문을, 판결 주문을 제가 안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것은 어디서 얘기가 됩니까? 기타로 좀 해서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이충원

예

● 총무과장 신춘우

그 관계가 말씀이죠, 해당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일단 그 법인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운전자의 교육이 제대로 안됐다, 또 정차 되지 않는 데에서 정차 했다, 또 내릴 때 안내원이 있어야 되는데 안내원이 없었다, 그래서 당해 보험사에서 교육감을 상대로다가 구상금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그 일부가 해당돼서 2,500만 원인가요, 그것을 이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자를 붙여가지고서 2,600 얼마를 지급을 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글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어저께도 논란이 된 충주의 그 아 파트에 관한 문제, 이런 것도 IMF가, 어저께도 이야기 댔습니다만은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니고 천재지변에 가까운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은 예비비로, 우리가 추경에 해서 그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경우하고 형평이 안맞는 것 같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도 운 전자가 잘못했든..., 교육청의 직원이 잘못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교육감이 물어라 하고 판결이 난 것 같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신춘우**

예, 일부요.

● **조일환 위원**

글쎄 일부를,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런 것도 바로 예비비에, 그래서 예비비 그것을 예비비로 해서 이것을 편성을 할 거냐, 안할 거냐 하는 그런 결정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비비 지출 건은 어떠한 채무가 지방자치단체가 된 것이고, 어제 충주시 임대아파트 관계는 우리가 채권자인데 그 채권을 확보를 못해서 그것을 확보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사실 세입이나, 세출이나 그 관계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너희가 부담을 하라고 해서 그것을 부담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이제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이제 우리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지출을 한 것이고, 어제 말씀하신 그 임대료 같은 것은 우리 재산인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어떠한 계약행위를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것을 민간인이, 쉽게 말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민간인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느냐, 그것은 우리 채권이거든요.

● **조일환 위원**

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 **위원장 이충원**

가만히 계서 보세요.

저 위원님, 이거 지금 말씀하는 건 저기에 관계없이 그저 예외적으로...

● **조일환 위원**

예, 기타사항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속기록이 이제 있으니까.

● **위원장 이충원**

기타사항으로?

● **조일환 위원**

예, 기타사항으로.

● **간사 이기수**

위원장님, 어떠세요. 저...

● **조일환 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조금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교통사고문제도...

● **이상일 위원**

조일환 위원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예

● **이상일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조례에 관한 거 선언부터 하시고, 기타 안을 상정을 하셔야지 그게 지금 토론이 끝나지 않았는데...

● **위원장 이충원**

예, 알았습니다.

조 위원님, 지금 궁금해서 물으시는 거  
죠?

● 조일환 위원

아니 궁금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죠.

● 위원장 이충원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은...

● 조일환 위원

그 교통사고도 거기의 내용을 제가 모르  
는데 우리 기사가 잘못했든, 또 그 학생을 하  
교나 등·하교라는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든,  
보험회사에서는 100% 물지는 못 하겠다, 너희  
들 과실 상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신춘우

맞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럼 그것도 사실은 운전자가 잘못했으니  
까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지 왜  
예비비에서 주느냐 이거예요.

또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 이해하는  
데 우리가 채권확보 못했다는 것은 그게 어  
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조건을 주고,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업무집행을 해라 했는  
데 우리가 공적자금이 수십조 원이 들어간  
게 됩니까? IMF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동산  
평가액이 딱 3분의 1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못하니까 다  
부실은행이 된 거예요. 우리 충주권도 그거  
와 같다고 봐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

은 그 당시는 충분히 평가액이 됐어, 그런  
데 이게 국가에 그런 시세의 이 환란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면 그것 또한, 그것은 개  
인에게 이것을 변상조치 하는 것보다는 우  
리 교육청의 집행이 됩니까, 어떻게든 효율  
적인 행정, 효율적인 교육현장을 만드는 게  
우리 집행이란 말이죠. 그럴 때는 예비비로  
해도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그러니  
까 저는 구상권 문제가 어느 개인에게, 교  
육감에게 판결이 났더라도 교육감은 또한  
선생님한테, 운전기사한테, 네가 교통신호  
를 위반했다, 속도를 위반했다, 관리상에  
잘못 했다 해서 보험회사에서 결손을 우리  
가 다 못내, 너희들이 일부 부담해라 했다면  
은 난 그거와 같다고 본다 이거죠. 되도록 우  
리 선생님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못됐다,  
결과가 나쁘다, 이런 것은 정상을 참작해서라  
도 구제하는 방안을 해 줘야 복지부동 공무원  
이 안 나온다, 저는 그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이충원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이제 그것을 답변까지 정식으로 들  
으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새로운 안으  
로 제가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조일환 위원

아니 그럼 그 관계가...

● 위원장 이충원

가만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앉은 것은 조례심의를 위해서  
여기 앉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사회를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 조일환 위원

부담이 있으시면 그런 쪽으로 하십시오.

● 위원장 이충원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꼭 들으시려고 하면 이거 끝난 뒤에 새로 안건을 상정해서 하시는 게...

● 조일환 위원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이충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안건을 준비를 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저희 집행청 직원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고백컨대 이 안을 죽 처음부

터 읽는데만 해도 제가 1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사실 읽는데만 해도.

전부 아주 수고가 많으셨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모법, 모법 하는데 사실 그 모법이 만들기까지에는 각 지역청에서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취합을 해서 아마 모법을 만들어서 시달한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무슨 하자가 있지 않고 그대로 저희가 따르는 것이 집행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봐서 그저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아무 일 없이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조례심사소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3분 산회)

0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이충원, 간사 이기수,  
위원 송진하, 이상일,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대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시설과장 오형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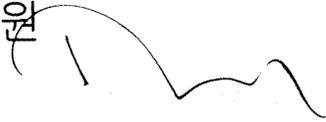
※ 부 록

- ▶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본회의(별첨 2)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본회의(별첨 3)

제1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1. 7. .

위원장 이충원



(별첨 1)

제129회 임시회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

○기간 : 2001. 6. 20(수), 6. 22(금) / 2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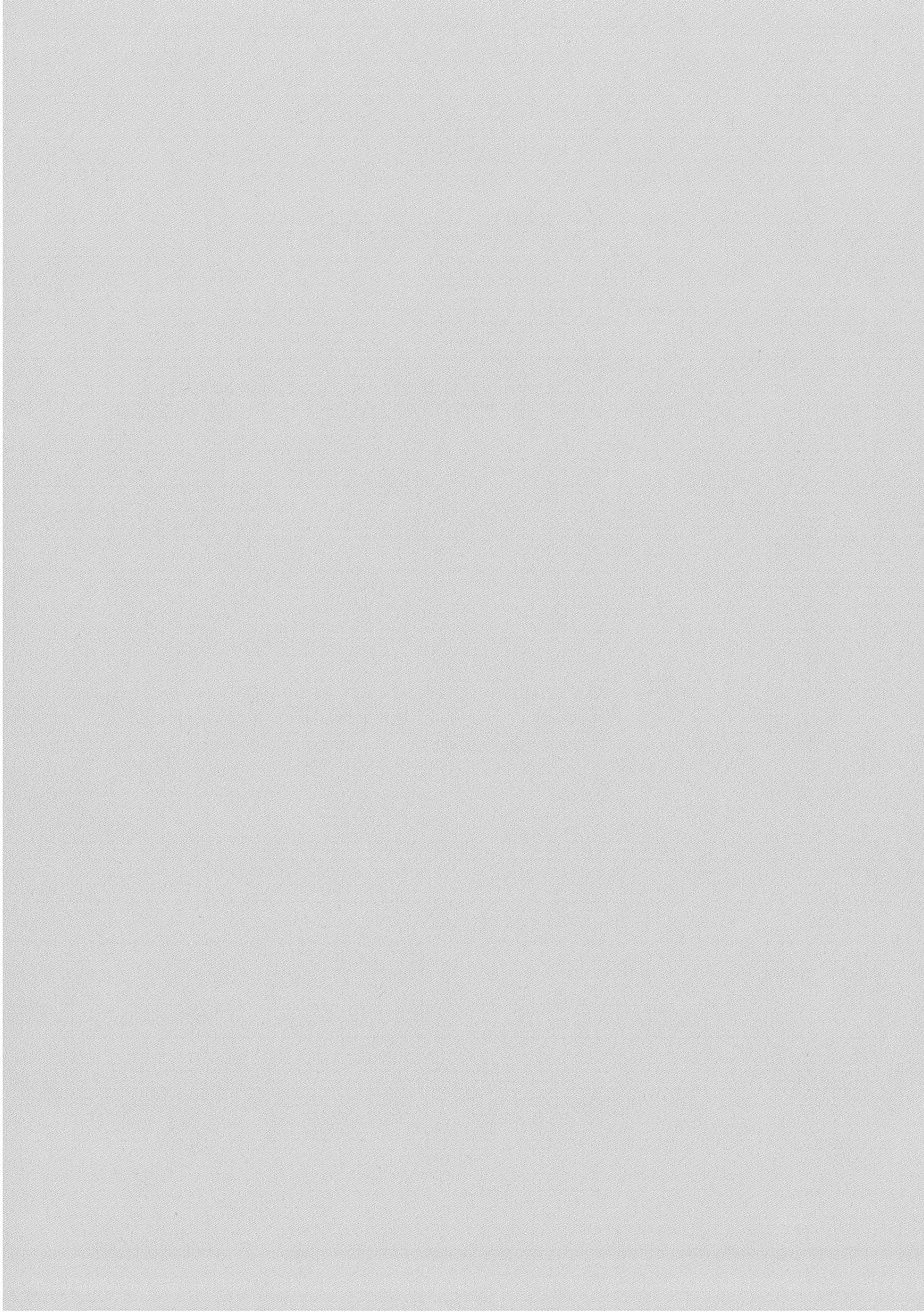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01. 6. 20.(수) ●11:50~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 위원장선출의건 - 간사선출의건 - 의사일정결정의건	
2001. 6. 22.(금) ●11:00~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안 (심사·의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결)	



第12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豫算・決算小委員會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제1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31
II. 제1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35
III. 제1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75
IV. 부 록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	.....179
2. 서면답변서	.....181



#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6월 20일 (수요일) 11시 27분

## 議事日程 (제129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27분 개회)

###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1시 28분)

###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하시죠, 이상일 위원님 하시죠.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이상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의가 없으므로, 이상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상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심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 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1시 30분)

● 위원장 이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 전에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천해 주시죠.

● 간사 송진하

내가 하죠, 자청해서.

● 위원장 이상일

송진하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진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송진하

위원장님을 받들어서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34분)

● 위원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뉘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함

니다. 승인 의견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4시 제2차 소위원회에서 2000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의견 및 2000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 4명

위원장 이상일, 간사 송진하,  
위원 이기수, 이충원.

○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6월 21일 (목요일) 14시 22분

## 議事日程 (제12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附議된 案件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4시 22분 개회)

### ● 위원장 이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  
비지출승인의건

### ● 위원장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

정 제2항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내용  
 이 간단하므로 보충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학교운영지원과장  
 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입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뉘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 참 조 : 2000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개요 - 본회의(별책 1)

이상으로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 좌석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좌석의 가나다 순에 따라서 송진하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송진하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깊이있게 검사를 해서 의견서를 받았습시다만은 그 중에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예산이 해마다 증가가 됐는데 우리 예산도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국가예산 증가만큼 증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99년도 예산보다도 2000년 예산이 감이 됐어요, 감. 어떻게 됐나요? 65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

● 학교운영과장 박영하

몇 페이지이죠?

● 간사 송진하

결산서 세부설명 자료 30페이지.

거기 당해연도가 있고 전년도 결산액이 있는데 '99년도보다도 2000년의 예산이 줄었어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좀 증가됐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송진하

아니죠. '99년도 예산액하고 2000년도 예산액하고의 차이가 65억 되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엄청난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이게 줄었다고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아까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예산현액에는 전년도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이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 예산보다도 금년도 예산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 간사 송진하

그게 '99년도 예산, 또 '98년도에 그런 현상이...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것이 이제 많은 해가 있고 적은 해가 있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청불)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 간사 송진하

그것도 내가 따져봤는데 별 차이가 없다고, 별 차이가 없어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별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 간사 송진하

한번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결산서 14페이지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 여기 예산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는 19페이지에 있고 고등학교는 23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불용액이 상당 액수가 된다고요. 그런데 교원도 마찬가지로 하지만은 학생복지향상을 위한 재정투자 수요가 7차 교육과정이나 또 교육현장에서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복지 예산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느냐, 거기 어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학생수 감소로 인한 잔액이고요, 또 토요일 급식을 지금 실시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토요일급식을 실시 안하는 그런 학교 때문에 예산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수도 한 3,000명이 감뻤거든요.

● 간사 송진하

학생수가?

●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예, 당초 예상 인원보다.

● 간사 송진하

그러면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복지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설사 학생

이 감소해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다 할 때 이것은 달리 학생을 위해서 사용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것 보다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주요사업 추진실적, 거기 5페이지에 보면은 과밀학급 완화 해서 거기도 많은 불용액이 발생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에서 선결문제가 학급당 학생수를 일정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56억 4,000만원을 이월을 시키고, 또 불용액도 24억원이나 되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그런 환경개선에서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것이 학교 학생수용시설 확충이 당초 저희들이 예산액에서 이제 집행과정에서는 공개경쟁으로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24억이 남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송진하

그런 문제도 물론 차액이 생기지만은 그런 중요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그 차액 이것보다도 교육, 우리가 바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재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33페이지 사학지원비인데요, 사학지원비. 얼마 전에도 보도에 보면은 도내 사학의 재정상태가 해마다 나빠지고 있

다고 이렇게 보도된 것을 봤는데, 여기 보 면은 54억이라는 54억 5,000만원의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우리는 공립이나 사립 이나 균등한 교육여건을 갖춰준다 하는 것 은 중요하고, 또 사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학의 실정으로 봐서 과도한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래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주로 저희들이 2000 회계연도에 사학지원 비가 예산액이 저희들이 666억 중에서 602 억이 집행됐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하게 이 월해서 쓰는 것은 8억 9,000 정도가 이월이 되고, 나머지 54억이 지출이 안된 불용액으 로 떨어졌는데 불용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대로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 런데 이제 당초에 서원학원의 운호고등학교 하고 충북여고, 청주여상, 그 다음에 증평 의 형석고등학교의 급식시설비를 우리가 지 금 예산을 책정을 해 놔었는데 잘 아시다시 피 운호학원이 이전계획에 맞물려서 이것을 급식시설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에 형석고등학교도 하수종말처리장 그 관계 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 뒤에 또 교육환경개선비를 상당히 많은 금액이 260만 4,000원이 불용 액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학생생활지도비에 서 제천 신덕중학교가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더 좀 감축이 됐고, 또 예산절감액이

2,300만원이 또 포함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자연히 많이 있었고, 또 거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사립학교 교원들 인건비를 보조함에 있어서 인건비가 공립학교 수준으로 주다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25억 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많은 사업예산이 불용액으로 돼 있었습 니다만은 앞으로 불용액을 최대한 적게 예 산을 편성하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 습니다.

● 감사 승진하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남긴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적정한 예산을 책정해서 최대한으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투자한다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 요. 그래서 사학에도 위축되지 않도록 이렇 게 공립과 같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99년도하고 2000년도 예 산대비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예산은 2000년도가 약 한 118억 정 도가 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 계획 짠 것은요, 그런데 이것이 결론은 명 시 및 사고이월이 '98년도보다 '99년도가 약 한 180억 내지 200억 정도가 더 줄었습 니다. 그래서 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간사 송진하**

다음에는 그 결산검사의견서, 거기 17페이지 결산하셨는데 거기 2000년도 말 채무액이 970억 몇십 만원이 되는데 '99년보다 220억원이 증가가 됐어요, 채무액이. 그런데 그 중에서 퇴직수당, 또 통·폐합 지원비는 부득이 해서 이해가 가는데 학교시설을 위해서 83억 900만원을 차입을 했는데 시설비 빠져도 차입을, 시설비도 차입을 해야 하느냐...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사실상 신설학교비의 경우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교부해 주는 비율이 어떤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신설학교비가 100억이 들어간다면 70억을 도와주겠다, 70%를 도와준다, 이런 비율이 없이 당해연도 예산에 따라서 들쭉날쭉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80억이라는 돈은 재특에서 저희들한테 교육부가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것이 재특용자를 할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특용자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안고 쓸 수 없는 돈이에요, 할당을 해 주면.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83억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재특용자를 빼고 나면 재특용자까지 저희들한테 도와준다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은 저희들이 상환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재

특도 일단 교육부에서 재경원에서 일정액을 할당받아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학교 신설교의 숫자라든지 전체 들어가는 액수에 따라서 분할을 해 주는 겁니다. 자기들의 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안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그렇다면은 경기도나 이런 쪽에 더 어려운 데 있으면 그리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돈을 재특용자 받을 돈을 그쪽으로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돌리지 않고 그쪽으로 올린 것으로 알았는데 결국은 타 도도 전부 안받겠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할당한 것은 너희들이 받아라, 그래서 이게 예산이 짜여진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 능력이 부족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도와준다고 내려보낸 그런 용자가 되겠습니다.

● **간사 송진하**

아니 도와주는 게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송진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송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그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말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재정법 관계법령을 준수해서 했

다면 전문가가 면밀히 검토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산서지만은 의문이 가는 부분을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개요를 가지고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이 7,838억 6,300만원으로 86.9%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및 제작년같은 경우는 대개 예년에 보면 지출액이 비율이 말입니다 몇 % 됩니까? 보통 86.9%면 예년도 그 정도 집행을 밖에 되지 않는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결산결과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집행액은 88% 정도이고, 그리고 2000년도는 86.9%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틀리는 것은 지금 불용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조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집행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불용액이 많을수록 집행율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하게 되면 결국 퍼센테이지가 높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율이 높으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집행했다고 볼 수 있는 애기인데 이 집행율을 높여가지고 불용액도 덜 생기게끔 해야만이 예산편성도 잘 됐고, 대체적으로 집행도 효과적으로 집행, 결국 불용액을 안남겨야 되겠죠, 투자할 곳을 다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86.9%는 14%에 가깝게끔 불용액이 생겨서, 이게 원래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생기는 건지, 이 집행율이 이렇게 낮은 건지, 이게 의심스러워가지고 제가 작년하고 제작년, 또 예년의 집행율에 대한 것을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좀 효과적으로 예산편성 된 거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갖고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끔 이러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제가 덧붙여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이제 도 세입 자체 수입이 적다보니 저희들이 기채 포함해서 80% 이상이 지금 국가세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가세입이 우리 세원의 주종을 이루는데, 그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돈이 교부되는 시점이 최소한 마지막 추경 이전에 와서 그것이 추경 이후에 당해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어 이것이 교부가 되면은 불용액을 최소한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데, 2000년도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연말에 많이 치우쳐서 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들이 기채잔액이 한 970억 8,000

만원 정도가 지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를 또 전액 예산편성 해서 쓸 수도 없고, 또 교부금이 늦게 오고 이리다 보니까 자금이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쓸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이 좀 있어서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익년도, 2001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율이 좀 낮았습니다. 앞으로 집행율을 좀 높이는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 다음에는 결산개요 11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교육청 불용율이 죽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교육청 불용율이 9.7%, 지역교육청 불용율이 9.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용율이 높으면 결국은 예산편성을 긴축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측면도 볼 수 있지만은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게, 지역교육청하고 도교육청만, 다른 데 본다면 불용율이 다른 항목은 적은데, 가만 있어, 11페이지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불용율을 본다면 도교육청 불용율하고 지역교육청 불용율이 유독 높은 이유는 어떤 데서 이렇게 된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방금 전에 이기수 위원님께서 순수한 예산을 편성했지만은 불용액이 많이 과다 발생돼 가지고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지 못한

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주로 불용액이 일반적으로 생기는 걸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생기는 것이 지금 시설비, 시설비 중에서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시설비가 이제 저희들이 본래 1억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지만은 저희들이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낙찰차액을 다음 번에 우리가 좀 그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쓰거나 했으면은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또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다음 해에 쓸 것을 좀 예비적으로 남기고 하기 위해서 예비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주로 불용액 낙찰차액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쓰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앞으로 시설사업에 있어서도 낙찰가격이 생기면은 그것을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2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시설사업 시행의 발주지연 6개월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 사고이월 중에서 말입니다 청원교육청의 수성초등학교 오수정화조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된 거죠. 그런데 그 공사 진도를 못하고 지출액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 어떻게 거기는 50%씩 공사진척이 됐는데 지출액은 하나도 안했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50% 공사가 진도가 됐다면 이

것은 반 공사를 한 얘기인데 그걸 하나도 지불 안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안해 갖고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지금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과 이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6개월 이상 지연 발주돼서 사고이월된 사업이 네 건이나 됩니다.

그 이유는 일신여고 교실개축의 경우에는 청주시 도시계획상 일신여고 경로로다 소방도로가 개설되도록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소방도로에 편입되는 토지하고, 철거건물의 보상비하고 사고이월비를 포함해서 총 여덟실을 저희들이 증·개축을 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도로개설이 2002년도에 가능하다는 청주시 상당구청에서의 회신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을 변경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월했기 때문에 생긴, 지연된 이유고요, 그 다음에 청원 수성초등학교 오수정화조설치 공사는 당초에 연도 말에 집행잔액을 사용해서 공사시행 중에 계약업자가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함에 따라서 연대보증회사 쪽에 공사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상당히 지연돼서 부득이 이월이 되게 됐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옥천 이원초등학교 직원 화장실 증축공사가 제1회 추경에서는 즉향

초등학교에 배정이 됐었는데 기존 즉향초등학교의 화장실은 개조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그 예산을 이원초등학교 사업으로 변경하는 관계에서 발주가 지연되면서 사고이월이 생겼고요, 청산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당초에 다목적교실 증축 및 기타 공사가 2000년 10월 11일까지 준공하기 위해서 진행 중이었는데 거기에 동일 현장에 2개 업체가 공사를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하는 관계로 그 사고이월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기 발주하는 등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업자가 50% 해 놓고서 공사를 포기했다면은 50%만큼은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금액하고 관계없이 당초에 그 공정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당초 업자가 공정을 한 그 비례만큼을 주고, 다음 연도에 주는데, 다음 업자가 이제 당해연도에 일을 끝내지 못하면 일단 예산이 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게 그렇게...

● 이기수 위원

글쎄, 한쪽은 50%, 한쪽은 30% 했어도 두 군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갖고서.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사업이 다음 연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발주를 못한 겁니다. 아예. 발주를 못했거나 아니면은...

● 이기수 위원

50% 진척을 받을 해 났어도, 진도율이 50%잖아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런 경우는 그 나머지 부분만 그렇게 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아니 그런데 진도율이 50%인데 어떻게 계약금은 있고 지출액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두군데가 그러네요. 사고이월 중에서도 공사 안한 데는 뭐 진도율이 제로인데는 지출액이 없어도 그것은 이해가 되고, 또 청산초등학교 직원 화장실은 53.4% 해 갖고서 일정금액이 지출돼 있고, 그런데 30% 하고 50% 한 데는 공사를 했는데 하나도 지출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진도율 하고 이 표가 저희들이 표현상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 회계연도는 2000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집행 내역을 뽑은 거고, 이 진도율은 그 이후에 진도가 나간 것까지를 포함해서 진도율을 났기 때문에 그러는데...

● 이기수 위원

그런데 거기 표를 말합니다. 같은 표에다가 옆에다가 자세히 놓는 것은 말합니다 시차가 다르게끔 한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보일까, 이게 오해를 하게끔 표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같은 표들은 그 일자를 같은 일자에 현황을 써야지만이 비교 분석이 되는 얘기지, 서로 다른 것을 갖고서 시차가 다른 것을 놓고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작성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상당히 혼동이 가게끔 되어 있는 거지, 이거야 어느 분을 붙들고서 묻는다고 해도 이것은 제가 보는 것같이 그렇게 보지 지금 설명한 대로 시차를 구분해 갖고서 (청불) 표에다 만들어 났다고 보기 어려운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죄송합니다.

● 이기수 위원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뵈어요.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한번 봐 봅시다.

11페이지, 거기 우리가 사고이월 중에 고실방수, 이렇게 해 가지고 사고이월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이월의 구체적인 사유라면 동절기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공사중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겨울철에 공사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중지시킨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국장님 다 아시다시피 일주일

후면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동절기 공사를 할 것을 생각해 가지고서 공사 중지 시켜 갖고 사고이월이 됐다면 전부 이번 장마에 완전히 방수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금년 예산에서는 도저히 이게 언제 어떻게 된 건지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동절기에 한 3개월 정도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저희들 집행청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로 가장 한냉한 기후가 오는 일정한 도수에서는 시멘트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시멘트 공사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것이 적기에 되지 않음으로써 지금 장마철은 다가오는데 과연 공사중지 3개월 때문에 하절기에 오히려 건물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부실공사 중지를 내림과 동시에 바로 기온이 상승되는 그 시점에서 공사중지를 해제해서 지금은 거의 상당수가 지금 공사가 완료됐거나 거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하절기 장마에는 충분히 대비가 됐을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채무액을 가만히 보면 970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물론 명퇴금도 들어가고 이랬을텐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전체 예산의 1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도 빚을 많이 지면 이게 문제인데 금년에도 보면 370억의 채무를 지고, 150억을 상환을 해서 221억을 빚을 더 졌습니다. 이거 앞으로 상환대책은, 물론, 명퇴금은 국가에서 받아 온다고 하는데, 그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이거 문제 없으며, 또 상환대책은 서 있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그 재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채무가 없는 그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많은 그 이자차액을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면서 채무가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근 10% 가까이 채무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채무가 지금 현재 970억 8,000만원인데 그 내용이 1999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교원들 명예퇴직수당 재원으로 621억 300만원하고, 2000년도에 통·폐합학교 지원하고 신설학교 시설비로 182억 4,900만원을 차입해서 803억 5,200만원이었었고요, 또 농협에서 '99년도 교원들 명예퇴직 재원을 차입하기 위해서 17억 2,800만원 중에 2000년도

12월달에 150억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가 167억 2,800만원이 있는데 그거하고 전자에 말씀드린 거하고 합쳐서 970억 8,000만원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환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당초에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이 기채를 할 당시에는 교육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부담을 하겠다는 조건하에서 이제 기채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국가에서 재정여건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일부를 지방 교육청에서 이것을 상환해 달라 라는 얘기를 강력히 주문을 했었는데 지난번 교육감 회의에 교육감님들이 국가가 약속한 대로 이것을 상환을, 이자와 원금을 전액 상환해 달라 하고 강력히 주문을 하셔서 그 뒤에 교육부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국가가 부담을 하겠다, 이래서 지금 명문화 돼 있고, 그래서 그 일부 2000년도 상반기 이자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수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하시는 원금과 이자의 상환대책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것을 전액 약속대로 이행할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 ● 이기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15페이지 보면, 예비비도 이번 한번에 질의하는 거죠? 예비비 지출.

(의사담당 “예, 맞습니다.” 하고 말함)  
예비비 지출에 제천 유덕초 병설유치원에

서의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에 따라서 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결국은 우리 학교측에도 잘못이 있다고 해서 구상금 지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판결내용을 본다든지 하면 지도교사가 같이 탑승을 안했다든지 또는 뭐냐면 교통안내를 안했다든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우리 쪽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구상금 청구를 해 갖고 보험회사한테 우리가 지분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스쿨버스를 지도할 때 앞으로는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비책이 혹시 있는지, 선생님들이 탑승해 갖고서 한바퀴 스쿨버스가 돌을 때 지도를 한다든지 또는 승하차 시에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라도 우리가 뭔가 구상을 해 놓은 게 있으셔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텐데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총무과장 신춘우

총무과장 신춘우입니다.

그런 사고가, 예상 못한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각급 학교에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특히 유치원 같이 어린 학생들이 하교할 때는 꼭 인솔교사가 책임지고 지도해서 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특별히 어떤 인력을 확보해서 그 안내원을 둘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러면은 그 학교의 교사, 유치원 교사가 지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런데 이게 흔한 사고는 아닐텐데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고, 또 책임도 우리가 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대개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스쿨버스로 승하차 시킨다든지 하는 그 시간이 뭐 한시간이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도 다른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같이 승차해서 한바퀴 돌아갔고 학생을 안전하게 승하차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해 갖고서 학생도 보호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이와같은 재정적인 손실도 입지 않게끔 이렇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신준우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금년도 7,8월경에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갖다가 아주 전반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시골학교의 스쿨버스의 유치원 경우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운전원이 책임지고서 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이기수 위원

운전원이 이제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고를 줄일 수 있지만 책임문제를 회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까지도 좀 심사숙고 해서 좋은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신준우

알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일 때 공사부진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적에 지체보상금이나 어떤 규제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주로 사고이월이 당해연도에 계약을 해서 그것이 공사가 당해연도에 끝나지 못하는 원인이 주로 이제 계약을 하는 발주청의 대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예산이 편성되는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대개 이제 지체상금을 물리는 경우에는 당초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물품을 완납하거나 시설을 준공을 하기로 한 날짜, 그 계약날짜를 어기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반드시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계약상에 발주청이 부득이 해서 당해연도에 물품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그 시설을 준공을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물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기수 위원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이충원 위원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는 것이 오히려 나올 것 같아서, 제 질의의 상

당히 많은 부분을 두분 위원님들이 한 것으로 대신하고, 몇 가지 제가 질의라기 보다는 한두 가지 권고와 또 제가 잘 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것을 조금 여쭙보겠습니다.

우선 두꺼운 겁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입니다.

여기 44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채권·채무액 보고서입니다.

거기 보면은 밑에서 셋째줄 같은데요,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임대차전세금이 있어요, 그렇죠? 밑에서 두 번째 임대차전세금, 445 페이지.

이게 제가 보니까 원어민교사 주택임차전세금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2000년도 중 발생액과 소멸액, 즉 증감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99년도 말 현재 전세채권액이, 채권액이 2억 4,200만원이었는데 작년 1년 동안 새로 전세를 1억 6,000만원 더 얻고,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1억 4,600만원 채권액이 줄었습니다, 그러시죠, 그건 맞죠? 2000년도 말 현재로는 전세금 채권이 2억 5,600만원이라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연도 중 전세기간 만료로 전세금이 반환되면은 그 전세금은 어떤 과목으로 세입조치 하시는지,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전세금 회수분은 잡수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잡수입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요, 제작년쯤인 것 같은데요, 원어민교사 전세를 얻어주고 채권확보가 잘 안돼서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몇 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이충원 위원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은 얘기입니다. 만든 북부쪽에서 원어민교사 전세로 아파트를 얻었다가 전세금을 떼이고 관련 직원들에게 변상명령을 내렸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돼서 못받아 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사실입니다.

● 이충원 위원

언제 전세를 얻었고, 즉, 전세발생권은 언제 얻고, 전세를 언제 얻었고, 채권발생은 언제했고, 전세기간 만료시키는 언제인지, 즉, 채권소멸로 이행기간 거래시키는 언제였는지, 전세금액은 얼마였고, 현재 얼마나 세입조치 되었는지, 왜 제가 이것을 여쭙보느냐 하면은 제 눈으로는 아무데도 받은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명세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일반적으로 이제 원어민들

에 대해서는 국가방침에 의해서 주택을 하나씩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기 때문에 주로 전세를 얻어서 그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도에 배정된 주택임차는 8동에 1억 5,6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임차기간이 다 도래되었거나 아니면 지금 입주해서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데, 그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주교육청 관내에서 '96년 6월 19일부터 '98년 6월 18일까지 2년 동안 전세기간을 해서 1,500만원에 전세를 얻어서 제공을 했는데, 중간에 이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 전세금을 회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채권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집을 건축할 당시에 910만원의 1차 담보가 이미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경매를 했을 때 저희들이 2순위로 들어가 가지고 주택은행에서 910만원을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2순위로 저희들이 거기서 채권을 확보한 것이 66만 6,350만원입니다.

● 이충원 위원

1,500만원 중에서?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래서 지금 부실채권이 1,433만 3,650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일단은 그 분들이 지금 전세를 안고 있는 집이 있습니

다. 그래서 그 전세권을 저희들이 다시 가압류를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지금 주택은행에서 아니면 다른 채권이 앞서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경매자금으로 회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자동차를 한 대 또 저희들이 가압류를 해서 가압류가 받아들여져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그 분이 지금 도피 중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도피 중이기 때문에 채권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확보가 지금 안되는 상태기 때문에 부득이 그 당시의 관계공무원들 네 사람, 교육장하고 계약한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이 1,400만원을 4등분 해서 변상을 하라는 1차 공문을 보냈습니다, 5월달에, 그래서 지금 두 분 정도가 그것을 지금 응하는 상황이고 당시 교육장님은 지금 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장의 계약관이 사실상 교육장인데 그 분은 지금 실무적인 업무는 이제 하급관료들이 하는 것이고 자기는 정책발전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납부하기가 곤란치 않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채권확보에 응해 오지를 아니하고, 한 분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다시 독촉화해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이충원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보는고 하면 그 받은 것이 있다 라고 하면 어디로 들어가 있는 항

목이 있는데 암만 찾아봐도 제 눈으로, 그래서 찾을 수 없어서...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잡수입으로 건 지금 건 처리를 해야 하나 현재 그것이 반 정도의 채권액만 확보가 된 상태기 때문에 충주시교육청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이 지금 통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 특별회계 세입에는 잡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충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죽 보면서 생각한 것이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관련 공무원들도 변상 못한다고 뻔고, 물론, 앞으로 바뀔 것죠, 제가 보기에는 못받을리 없습니다. 이거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은 상당히 이런 점이 참 어렵지 않느냐,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제가 뭐 이거하고 직접관련...

뭐 그대로입니다.

채권·채무보고서에 그렇다 라고 하면 채무로다가 해서 그냥 놔둘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딘가는 표시가 뒀었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중간에 아무데도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여쭙보고, 또 실제 현금으로도 납입된 게 있는데 뭐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럼 내년에도 이게 못받으면 내년에도 또 이런 꼴이 되겠죠,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국가채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1,400만원을 과연 계약할 당시에 계약에 참

여했던 공무원들이 그 담당공무원으로서 관리 주의를 다 했느냐, 아니면 관리를 소홀히 했느냐를 한번 심도있게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정말로 계약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객관적인 상황만 판단이 된다면은 불납처리가 가능합니다만은 그것이 소명이 안될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해서라도 채권을 확보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결산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조금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또 쉽게 얘기하면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시든지 해서 추후 이것을 어떤 방법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조금 의문이 나서 여쭙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14페이지 밑에 보면, 아까 이기수 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송진하 위원님도 물으셨는데 이것을 조금 보충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맨밑에 보면은요, 청산초등학교의 교직원 공동사택신축 설계용역입니다. 이게 지금 납품지연인데 지금쯤 되어 있나요, 이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

이 당초에 육천 청산 교직원 공동주택 용역을 준 것이 공사비 2억 8,200만원에 2000년 9월 30일 2회 추경시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 10월 20일날 광장종합건축에 납품기한을 2001년 1월 6일로 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설계사무소의 사정으로 인해서 2000년 3월 31일날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6일 동안 지체를 해서 저희들이 지체상환금을 저희들이 받았고, 또 이것은 사고이월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왜 그러나 하면 세 학교가 지금,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세 학교가 지금 공동으로 해 놔는데 청산이라는 데가 지도를 보면 아시지만은 산지 사방이 어려워요. 그 뭘니까, 육천서도, 하숙할 때도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이것은 빨리 아마 이것은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납품지연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네요. 세 학교가 한꺼번에 졌는데 청산초등학교 옆에 터를 제가 가 봤습니다, 실제로, 가봤더니 장소도 좋고 그런데,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얼른 되기를.

그 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좋게 보면 다양하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로 말하면

어떤 면으로 보면 좀 심각하고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예산편성에 말이요 부적정, 시설사업에 부적정, 명시이월비 미집행,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그런데, 세입예산편성 미흡, 이런 공문서에 부적정이라고 이렇게 쓴 것은 내용이 어떻든지간에 이게 제가 표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이 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야, 이 정도로 혹평을 했나, 작년에도 봤지만은 이런 표현이 없었는데, 예산편성 부적정, 시설사업 부적정, 세입예산편성 미흡, 이렇게 돼서 이걸 보고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책임이 저희들도 있는 겁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입장에서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멧쩍고, 어떤 면으로 보면 좀 심정이 저기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주제 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실텐데 집행청 전문가들이 좀더 이런 분야는 조금 여기 보낼 때부터 조금 다듬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본도 교육을 위하고 또 저희들마저도 생각해 주시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아까 예산 쓰고 남은 것의 잉여금에 대해서는 뭐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조금 잘 몰라 여쭙보

네요.

명시이월비 미집행 건 같은 거요, 그 당시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었는데, 이런 게 자꾸,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대로 뭐 (청불) 이하 내리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는데 매년 보면 이 분야가 상당히 많이 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아니냐, 특히, 어딘가 지금 얼른 기억이 안나는데 2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결산검사의견서, 여기. 재산매각대금 세입 미계상 현황,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그러니까 세입예산편성이 미흡한 데예요, 이게. 이것도 조금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딘가 진천인가 어딘가 땅을 내가 보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향교재산입니다.

● 이충원 위원

그것 좀 한번 국장님, 제가 여쭙 보겠습니다.

땅 팔어 발생하게 될 토지매입비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미리미리 챙겨서 마지막 추경에 좀 반영을 할 수는 없었던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것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농·공고에서 향교재산을 현재 점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를 매년 부담을 하고 있는데 마침 향교측에서 자기네 소유 중에서 진천농·공고

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각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99년 10월 5일날 매입요청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당시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조사해서 2억 2,149만원을 '99년 11월 24일날 제3회 추가경정예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거래실례가격보다는 제1차적으로 하는 것이 감정가격인데 3개 기관의 감정가격을 내보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했던 금액보다 1억 2,300만원 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사들이기로 했던 물량을 다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그 땅을 감정을 안했었나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감정가격이 높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기 직전에는 감정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래도 대개는 추측을 하실텐데.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대개 이제 거래실례가격 가지고 하는데, 거래실례가격...

● 이충원 위원

거래실례가격이라는 게 감정가액보다 높겠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실질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향교재산이고 그 부분이 거래실례가격

이 인근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이것이 이제 농·공고에서 이미 그 부분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가격 적용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그것을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좀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좀 많은 금액을 얻어서 현실에 맞게 이것을 예산을 편성했었더라면은 이런 사업착오가 없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지금에 와서는 듭니다. 하여튼간에 결과는 그 당시 감정가격이 너무나 감정가격이 높게 나와가지고 그 감정가격 대로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가지고는 물량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서 구입을 못해서 저희들이 아주 죄송스럽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 땅이 꼭 필요한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현재는 농·공고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사 가라고 하니깐, 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들이 교육재산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예, 그래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돈을 그냥 이월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예.

● 이충원 위원

사실은 제가 왜 여쭙보느냐 하면 큰 돈이 아닙니다. 1억 한 2,000만원 들면은 사는 겁니다. 시가대로 사라는 것도 아닌 거, 향교 땅인지는 뭔지 모르지만 감정가격에 산다 라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여기 또 지적을 하나 이 받은 것 같은데 보면은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이충원 위원

이것은 처음서부터 조금, 뭐 1억이면 크다면 큰 돈인데 아주 조금 이것을 계상해서, 추경이라도 해서 확보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나 하면, 아까 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해마다 이월사업이 많다고 하는데 이 하나라도 좀 줄여줬으면 어떻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것은 제가 잘 얼른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아까 이기수 위원님이 여쭙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리려고 그랬는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이것은 교장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대요, 하시지만은 제가 보면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규모 학교는 어렵긴 참 어렵겠대요, 차 하나 떠날 적마다 선생님이 같이 타신다는게. 큰 학교같은 데서는 뭐 선생이 많으니까 교대로 하지만은, 참 어렵기는 하지만은 학생지도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선생님들이 동승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지만은 현장에 가보니까 참 어

렵다, 그런 것을 제가 느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시대요, 현장에서

다른 것은 제가 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벌써 1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집행청에서도 점심 잡숫고 급히 오시느라고 휴식시간이 없으셨을 겁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 위원장 이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저는 늘 같은 얘기 잘 합니다만은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은 우리 집행청에서도 듣기도 좋고 또 수긍하실 것은 해 주시고, 그러니까 보기도 좋은데 저는 가끔말입니다, 가끔 이래 보면 괜히 얼굴도 붉힐 때도 있고, 사실은 뭐 그런 게 더러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럴 적마다 내심 미안하고 내가 뭔가 표현 방법이 나빴다, 이런 걸 내가 늘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제과점 아까도 빵을 먹어 봤습니다만은 빵이 맛있다, 없다 하는 것은

감별을 하는데 빵을 어떻게 만드느냐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전문가가 이렇게 철저하게 감사한 것을 여기서 뭐 불가불하게 좀 평가랄까 의견을 좀 첨삭을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우리 충북교육을 아끼고 어떻게 하면은 예산을 잘 썼느냐, 또 잘 쓰겠느냐, 이런 쪽의 그런 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이 결산검사 있을 적마다 꼭 한 말이 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결산검사위원회의 조직이 어떻게 되는 거냐, 조직이. 교육위원이라고 저는 뭐 다른 위원님도 같습니다만은 엇그저께도 또 편지 한통 받았어요. 지금 충북교육이 이려고 저려고 뭐 이런데 교육위원 어용 아니냐, 어용. 그러니까 집행청에서는, 아이구조일환이 때문에 못해 먹겠다 소리 나오고, 또 일부에서는 격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더 잘해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충분히 좀 역지사지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의 입장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산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 국장님 아시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세부적으로 법령관계는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도의회에서 지금 저희들 교육감이나 도지사의, 집행청의 의견 없이 아마 예결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 조일환 위원

그런데 도의회에서 몇 명,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몇 명, 그렇게 되지 않아요?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 들, 경험자 들, 공인 회계사 들,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추천을 안받았어요.

● 조일환 위원

그 사전에 교감이 좀 이래 전혀 안됩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가 '91년도에 지방자치 첫 해에 결산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안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교육위원님들 넣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해서 그 이듬해에 한 번인가 들어가시고 그후로는 한번도 지금까지 안넣은 것 같습니다.

● 조일환 위원

도의회는 많이 바뀌는데 소위 그 경험자, 말하자면 국장이나 과장하신 분들은 거의 같은 분들이 여러번 들어가죠? 매년 바뀔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거의 바뀝니다, 그 분들도.

● 조일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은, 저도 도의원 교사위원들하고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탁도 했습니다. 교사위원하고

교육위원이 뭐냐, 한 배다. 한 배. 미안하지만 교육에 대한 어떤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나 이것으로 봐서는 교육위원이 그래도 전문인이라고 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교육위원회에서의 조례나 예산을, 물론, 거기에 최종 의결권은 있지만은 그 교육위원회 의결과 반할 때는 사전에 한번쯤 교육위원을 불러다가, 뭐 좋다이거, 그래서 서로 교감을 나누고 결산감사 같은 것은 특히 교육위원 하나쯤은 도의회에서 구성할 때 해야 여기서 잡시비가 없어진다, 그리고 알지 않습니까? 실제 이거 주고 당신 결산검사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위원님들 어떻게 보십니까만은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이거.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형식적인 이런 시간, 그저 내가 위원이니까 마지 못해서 그냥 몇마디 하는 이런 결산검사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 쪽으로 교육청에서도 도의회와, 어차피 많이 교사위원들하고 교감을 주고받으니까, 그래야 우리 집행청도 좀 편하고 편리하다 말이야, 서로 교량역할도 하고 이런 쪽으로 부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연도별로 그 예비비, 예비비, 비율이죠, 또 사고이월액, 또 세계잉여금, 또 추경횟수, 이것이 '98년부터 지금까지 그 횟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통계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자료를 지금 준비 못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없죠, 이것을 추후에 좀 주세요, 주세요.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연도별 예비비가 '98년도에 10%를 썼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0. 몇 %를 쓰고 남은 예비비가 어떻게 됐느냐, 채무로다가 높은 이자 물고 예비비로 나머지 돈은 평잔액으로 조금 받고 있는 것 아니예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개인 같으면 이런 장사는 절대로 안합니다, 절대로.

또 여기 결산검사 의견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예비가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추경 때마다 예비비를 편성을 했어요. 이견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를. 돈이 예산이 됩니까. 적정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적정하게 집행을 해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게 예산이죠. 국장님, 맞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조일환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해서. 또 이것이 '98년부터 급격히, 저는 통계를 아직 안봐서 모릅니다, 예비비가 많았다, 예비비 비율이.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우리가 예비비를 뒀는데 재해다 뭐 하면 추경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비비는 정상, 그야말로 예비비란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쓰지도 못하고 수백억씩 집어넣어 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의 관행을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동의합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에 분명히 이것을 반영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는데, 아까도 송진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이기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국가수입에 너무 의존을 하고, 저희들이 채무라든가 아니면 시설비를 거기에 예비비에 두고 사업비에 편성을 안해놓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좀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비비가 적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충북교육에서 가장 관심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과 인사거든요,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조일환 위원

예산과 인사입니다. 인사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예산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그런데 이 사고이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도저히 납득이 못하는 일이 있어서 그래요. 아까 일신여고의 교실증축, 그렇죠? 사고이월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중·개축.

● 조일환 위원

중·개축, 이게 도시계획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소방도로.

● 조일환 위원

그러면 이 소방도로가 청주에서 시행한다는 나름대로 연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행정과 협의를 해서, 야, 우리가 중·개축 하는데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소방도로를 개설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언제 하겠느냐,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배정을 하고 보니까 소방도로가 걸렸다면은 이것은 저희가 사업추진방법의 이론에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국장님.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렇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번 해 보세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제가 마침 청주시 도시위원입니다.

● 조일환 위원

아, 그러세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아는데 당초에 일신여고가 지금 문화재라고 해서 좀 있습니다. 옛날 양반이니 뭐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50m 이내에는 건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 때문에 터는 넓은데 건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편으로 소방도로계획서에 나 있습니다. 그 도로계획서는 가건물 사이를 뚫고 나갔습니다, 급식을 하게 되어 있는 장소인데. 그래서 일신여고에서 그것을 밖으로 돌려달라, 현재는 건물과 건물 사이를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대로 뚫으면은 건축이 바로 나가는데 그것을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것을 돌려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왔는데 제가 그것을 또 반대를 했습니다. 완전히 밖으로 내라, 담 밖으로, 당신들이 학교가 비어있다고 해서 이것이 빈 공간이 아니다, 테니스장이 거기 비어있는 것 같지만은 그 테니스장이 애들 수만 명이 거쳐가는

교육의 장소인데 그것이 비었다고 아무데로 나, 단독주택은 털고 나가면 그 사람들 이사 가면 그만이지만 학교건물 그거 한번 헐어버리면 학교건물만 좁아서 헛일이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자연이 됐 습니다. 그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조일환 위원

더구나 우리 김 과장님이 도시계획위원이 신데 그 땅이 어떻게 이해관계라든지 지주 가 어떤 성향이라는 것을 잘 아시는데 사전 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너희들 도시 계획에 대해서 확실히 소방도로를 내라, 우리 교육시설이 시급하니까 좀 해 달라 하고 사전에 그런 쪽의, 그러니까 사고이월이라 는 게 교육연구원처럼 하다보니까 뭐가 무 너졌어, 이게 사고이월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이월은 우리가 사전에 얼마든지 막자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글썄 예를 들면, 자, 좋습니다, 그걸로 끝내십시오.

그 다음에 추경횟수가 어떻게 제한이 있 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면 가장 바람직 하죠. 그런데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됐든, 세입재 원이나 세출재원이 요인이 생기면은 이제 추경을 하게 되는 거죠.

● 조일환 위원

저는 이게 통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번거롭더라도, 번거롭더라도 추경은 적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김 과장님 저기 계 십니다만은 요전에 소년체전이 내일 가는데 오늘 여기서 추경해서 소년체전에 쓰는 혼 련..., 물론 집행은 했겠죠, 그런데 그런 쪽은 돼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부득이한 그런 추경이 들어오고 그랬습 니다만은 예산이 확보되면은 예비비가 좀 많이 있다든가 하면은 그것부터 집행을 하 고 이렇게 우리가 돈을 늘리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서 제가 이거 예비비라든지 추경, 이것을 서면으로 요구했으니까 좀 자세하게 주시 고, 그때 가서 또 제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교육 이외의 재산 이 많죠? 그러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잡종재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일환 위원

예, 잡종재산이 많죠.

제가 언젠가 행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 다만은 학교림이라든지 부지라든지 건물이 라든지, 어떤 것은 무상, 어떤 것은 유상, 어떤 것은 그냥 막말로 자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학교라고는 말 못하겠습 니다만은 어느 학교는 학교부지가 7,000평 이 넘어, 학생은 300명 돼, 그런데 또 수억 을 들여서 또 토지매입을 했어, 이런 경우 에, 이런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겠 느냐, 그러니까 우리 요전에 제가 오 과장 님께도 대단히 거칠은 말씀을 드렸는데, 늘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순위의 그것을

지금 자료준비를 하시고 계십니까?

(끝에 실음)

(관계관 석에서 “예” 하고 말함)

예, 그래서 그것을 되는 대로, 지금 학교를 다 지어주고 교실을 증·개축을 했는데 그 건물이 그냥 남아 있어요, 있죠,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지금 어느 학교를 지칭하시는 지...

● 조일환 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기 대단히 어려운데 수 군데 있습니다. 또 실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활용.

그래서 나는 그것을 털어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우선순위를 넣어 달라, 그리고 법적으로 저희들이 가보면 전혀 내구연한도 안된 것을 다시 짓는 데도 있어요, 이것은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행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실 때라도 정말 저도 지금 와서 할 얘기가 없는 게 나도 의결을 한 사람이다, 그때는 몰랐다 말여, 그런데 보니까 이게 '70년대 지은 것을 지금 털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공정하게 처리가 됐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 다음에 교육활동 이외의 재산관리 현황을 좀 서면으로 주세요.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알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좀 상세하게.

건물, 대지, 임야, 이렇게 하시고 거기에 실평수하고 이거, 지금 어떻게 쓰고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모 초에는 사택이 그냥 있습니다, 모 초에는 학교운동장 귀퉁이에 큰 땅이 그냥 있습니다, 배추도 갈아먹는 일도 없고, 모 학교의 산림은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원, 20원을 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재산관리도 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주시고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조일환 위원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기초가 있겠죠, 기초. 그 예산편성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제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 조일환 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좋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언젠가 한번 설명을 올린 것 같습니다만...

● 조일환 위원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아까 추경을 횡수에 제한받지 말고 받아라 하는 그런 말씀도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추경작업을 하려면 적어도 3개월 정도의,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몇 직원들이 뭐 거의 밤을 세우다시피 해서 하기 때문에 실상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추경 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추경이라는 내용 자체가 그 어떤 추경에 올라가 있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참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은 자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금방 하고 금방 또 한다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도 못하고 하느냐 하는 지탄을 받을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이면 장래 것을 다 예측해서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횡수를 줄여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추경은 대충 저희들이 각과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대충 추경자원이 세계잉여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이 2,3월 정도 가야

그 추계가 나오기 때문에 추계가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원을 봐가면서 각과에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내용, 또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받은 각종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같은 자원을 포함해서 그것을 각과에서 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서 실무자서부터 최종 교육감님까지 사정을 받은 뒤에 편성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부가 많이 되네요.

그 다음에 재량사업비라는 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감님이나 부감님이나 국장님이 어느 교육기관에, 또는 교육과 관계있는 사람한테, “이걸 하나 해 줘요, 이게 급합니다” “아, 그래요? 해 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소위 수시로, 수시로 예산을 교육감이나 부감이나 또 우리 국장님이나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재량사업비 관계는 교육감님만...

● 조일환 위원

아, 교육감님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하시는 것이고, 교육부에서 인정을 해 주기를 지난 해에는 0.2%까지 인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0.1%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8

억 정도 지금 서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럼 예비비하고 별개네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별개입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으로...

● 조일환 위원

그것은 교육감님 판단대로 하는 거네요, 그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각 학교에나 지역교육청의 요구를 받아서 그것을 사정해서 주게 되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러니까 요구라는 것은 현장에 교장, 학부모 대담해 가지고 “아, 우리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요? 교문 고치시오.” 이렇게 되나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게 되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래서 이런 예비비와 소위 재량사업비, 이것이 자칫 혼동을 할 것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재량사업비라는 것은 물론 교육감의 권한이니까 저희들이 얘기할 게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 도지사도 판공비를 공개하라, 교육감도 판공비 공개하라, 이런 시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재량사업비도 어떤 그래도 원칙을 있으실 거라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재량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는 시급한 현안 사업 위주로 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학교에 재량사업비 배정한 것은, 물론, 여기서 고등학교는 직접 배정을 하고, 초·중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배정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교당 이것을 어느 특정 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루 그것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대략 3,000만원 미만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고이월에 대해서 이기수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제 사고이월이 어디서, 사고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교육청에 있다, 그러니까 발주청에서 있다, 말하자면, 그럴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보상을 해 줘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사고이월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마냥 무슨 부상이나 이런 뜻...

● 조일환 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걸 계약을 당해연도까지 끝낼 걸로 보거나, 아니면 당해연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공기가 도저히 당해연도에는 못 끝낸다, 그래서 계약을 당해연도에 이뤄진 것 중에서 끝나는 시점은 익년도로 이월되는 것을

그냥 우리가...

● 조일환 위원

그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뭐가 다릅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명시이월은 사업을 인정을 하되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것은 계약도 익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그 사업은 우리가 명시를 해 준다, 단, 계약을 못하면은 이제 올해 계약도 못한다 하는 것은 전부 명시이월로 구분이 되고, 또 사고이월은 올해 계약은 다 했지만 올해 사업을 못 끝낸다 하면은 사고이월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지체상금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한 납품일자나 아니면 준공일자까지 준공이 되었느냐, 물건이 납품이 되었느냐, 그 날짜를 지연되는 데만 지체상금을 들고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책임이 아까 우리 김 과장님 말씀처럼 일신여고의 교실증·개축이 도시계획에 이것을 시행을 하려고 그런데 그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에서 그 도시계획서를 돌려달라고 청주시에다 요구를 하니 사업집행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실상 이제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다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약간 돌려주는 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예 학교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은 의결이 안됐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게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그 시공자에게 계약이 다 끝난 연후에 그런 것이 발생해서 사고이월이 됐다고 하자 이거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죠. 그러면 시공회사는 전부 다 준비하고 다 됐는데 이거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렵고, 또 우리는 언제까지 다 해서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게 나오고, 만약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잘 모르니까, 제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일반적으로 계약을 이제 하게 되면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규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부득이해서 그 발주청인 관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것이 인정이 된다면은 계약기간을 연장을 한다든가 해서 발주청에서 그것은 아마 조처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글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 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방수를 한다, 이것이 예산을 추경을 10월에 따서 11월에 집행을 시켰다, 이런 것이 “아, 추워서 못했다, 사고이월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사업선정을 시기같은 것

을 잘못 택하는 거죠,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생기는 것은 거의가 제가 볼 때는 인재다 이거죠, 인재다. 우리가 사전에 상당히 방지할 수 있는 것을 그 예산도 묵고 그 업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피해는 되도록 줄여가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앞으로 줄여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데, 특히 방수공사에 대해서 이기수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는데, 방수가 잘 되다가 한해 여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장마의 강우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노후도가 잘 되던 것이 그때 방수가 안되는 경우가 장마철이 지난 9월이나 10월달에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그러면 그 예산을 과연 본예산에 이제 우리가 미리 잘 인지가 돼서 넣는 경우가 있으면 더욱 바람직한데 부득이 해서 그게 늦게 파악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까봐 사실 좀 두렵습니다만은 지금 이월관계를 여

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그 이월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회계연도 도입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잡고, 지출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잡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회계연도 도입의 원칙이 너무 고착되어 있으니깐 그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반제도에 이월제도라든지 계속비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2월 추경에 재원이 마침 들어와서 추경을 했으면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겠죠, 그 해에 완료를 못하니깐, 그럼 지금과 같은 내용이라면 그 해에 이월시 추경을 해서 그것이 8월이 됐든 9월이 됐든 계약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시키면 바로 그 이듬해 일찍 해동되면서 일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제도가 없다면은 그 이듬해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설계해서 발주하게 할 것 같으면 그 이듬해 말에 가서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부분은 부정적으로 보지마시고 긍정적인 요소로 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조일환 위원

그래서 그것은 뭐든지 우리가 만전을 기

하기 위해서 만약의 경우도 있으니까 명시이월이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하나, 되도록 사고이월은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 방지하는 것이 좋지, 그렇다고 해서 사고이월이 많아서 공사가 늦어지고 예산이 묵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게 아닙니다.

● 조일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 결산검사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왜 원 예산에 이것을 예산편성을 안하고 왜 추경에 했느냐, 이런 쪽으로 지적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결산이 마감되고 확정액은 3월 중순이 넘어야 확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이 1회계연도 끝나가지고 12월 31일날 딱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본예산에 넣을 수 없는 게 본예산은 우리가 교육위원님들한테 제출되는 게 9월달에 제출됩니다, 전년도. 그러면 전년도에 회계연도 마감도 안됐는데 순세계잉여금 다 갖다 본예산에 넣을 수 있으나, 그것은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기술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일단은 한 3년 동안 세계잉여금의 추세, 이

것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넣고, 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1회 추경에 그것을 넣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액대로 국가에서 돈이 다 올는지 안올는지 세수가 불확정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 담세력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걷어 가지고 그 부분의 일부분을 교육부나 교육예산에 주는 경우는 이게 세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12월 31일날 과연 교육부에서 오는 돈이 덜 올 수도 있어요, 예시액보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본예산에 보다 많이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은 조금 기술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저도 국장님 같은 견해로 본 거예요. 아,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못했느냐, 마감이 아닌데. 내년 예산은 벌써 10월말 확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것을 어떻게 예상하느냐,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적한 것은 뭐냐, 추경에 하더라도 놀리지 않고 빨리 하라 이거죠, 9월달에 가서 왜 하느냐 이 말이야, 그렇죠?

국장님.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9월달에 저희들이...

● 조일환 위원

여기 보시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00년 4월 25일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9월 30일

편성 계상하였음,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되도록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을 때에 늘리지 말고 빨리 써라, 그런 지적으로 보면 됩니까,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게 문맥으로 봐서.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계잉여금을 가급적 근사치를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당초예산이 8월부터 작업 들어갑니다. 명년도 당초액은 금년도 8월부터 작업이 들어가서 10월 20일까지는 교육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빠진 부분입니다.

● 조일환 위원

그래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된 겁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런데 두가지 그 밑에 조치의견 두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는 편성지침에 따라서 조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겼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예비비 예산액은 예비비 예산액 또는 초과지출이 예상되는 최소한의 비용은 빨리 계상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2회 추경때 저희들이 포착을 못하고...

● 조일환 위원

그래서 저도 이해도 못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같은데 아까 이충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임대주택을 한다든지 재산관리하면 여기서 지침이 내려가죠? 임차는 어떻게 해라, 내려가죠, 그렇죠? 그냥 교육청에서 그냥 계획 세워서 교육장이 결재하면 끝납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아파트를 얻어라, 그러면 부동산,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를 해라, 그런 게 있죠? 공식적인 규정 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 관리조례라든가 이런 내용에 일반적으로 규정이 있는 것 외에 아주 세부적으로 이것을 이래라, 저렇게 해라 까지는 저희들이 지침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은 못내립니다.

● 조일환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충주같은 데도 공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칫하면은 지역청에서만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분명히 임차할 때는 어떠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하라고 지침을 줬을 거다 이거죠. 지침을 안지켰을 때에 제가 볼 때는 그 쪽의 집행관이 책임을 지는 거고, 지시대로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가항력이 생겼다, 그래 그 사람도 뭔가 억울하기 때문에 못 물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런 것은 만약에 안돼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이런 것을 아주 조례는 아닙니다 만은 지침을 줘서 임대할 때는 주택은행이고 뭐고 일체 저당된 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을 썼으면은 이런 일이 없지, 주택은행에 1차 저당이 돼 있는데 관에서 임차를 했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안합니다, 개인도 안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부동산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위원님에 동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상황은 지금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 아파트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임대해 줘야 되는데 국가 예산이 없으니까 1,500만원을 내주면서 아파트를 얻어라, 그래 1,500만원 아파트를 짓는데 대개 서민용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것을 질 때에 주택업자들이 주택은행으로부터 용자를 안받은 상태에서 전액 자기 자본으로 지어가지고 분양을 한 경우에는 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 조일환 위원

그렇다면, 그렇다면 지역청에 책임 넘기지 마세요. 돈을 적게 쥐놓고 아파트를 꼭 해야 되겠다, 그래 그럼 그 돈 가지고 할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택은행에 돼 있는 것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서 융통성 있게 안될 때는 일반주택으로, 그러면 안살면 그만두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더 주겠다 말

이야 그랬어야지, 돈은 1,500만원 주고 아파트를 얻어줘라, 어떻게 집행해, 안될 때는 어떻게 해, 못한다고 그러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이 지금 보는 견지에 따라 틀린데 일반 상식적으로 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도 뭐 교육부에서 이제, 교육부 사업인데 그게, 한 3억이나 4억자리 와가지고 한 32명자리 얻어주라고 했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그때 국가적으로 일률적으로 1,500만원씩 보조가 돼서 우리가 자체예산을 좀더 주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외국인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있는 적정가격인지는 고사하고 책임문제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이, 계약담당관이 자기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1차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할 때 구체적인 지침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계약담당관이 소신껏 하지 못하고 지침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면 지침을 내린 분이 잘못인데, 계약 관계는 쌍방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이 1차 책임은 계약관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임대를 해라, 이런 지침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만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계약관이 선량한 의무를 다해서 국가와 국민들이 낸 세금의 오해도 없앨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느냐는 문제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그것을 다 했다, 못 했다,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조일환 위원

이게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볼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직원, 그러니까 지역청의 직원들이 이게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어요. 안하는 게 낫지, 그럼 뭐여, 너 항명했다고 그럴 거 아니예요. 그럼 위험부담을 느끼면서 그래 아파트를 꼭 얻어줘라, 조건을 안쳤으면 그 사람들이 확실히 채권 확보 되는 것을 하는데 1,500만원 가지고 그래 상식이지, 뻔히 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1,500만원 가지고 못 얻을 거라면 여기서 그런 걸 지시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물가조사를 해 봐야지, 충주면 충주, 청주면 청주, 서울이면 서울 다르니까 한번 물가조사를 해 봐서 충주지역에 25평, 15평 아파트 기준으로 1,500만원이면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사전에 있어서야지, 조건을 줘서 두가지 이것을 충족시켜라 하고 “너, 해봐라” 그러면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거 되겠어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 조일환 위원

아니 그래서 국장님, 이런 것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차후로는 이런 고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차후의 개선책을 여기서 논하자는 거지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한가지 분명한 것은 그 당시 금액이 적어 가지고 계약이 잘못 됐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소홀히 했느냐 안했느냐에 문제가 귀착되는 것이지, 돈이 적기 때문에 아파트를, 뭐 부실 아파트를 얻었다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 이상일 위원

제가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말이죠,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처럼 소형아파트가 경기가 좋아서 4,000, 5,000만원 갈 때 같으면은 주택은행으로부터 용자받은 것을 제하고도 임대차 한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파트 값이 절반으로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그 1차로 주택은행 것 빼고, 우리가 2순위 아니예요, 받아낼 길이 없어요. 그런데 원어민이 오면은 빨리 방 안얻어 준다고 아우성은 치지, 얻다 보니까 거의 아까 우리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90%가 아파트가 1순위가 주택은행이란 말이야, 그런데 1,500만원을 가지고 외국인이 기거하는데 괜찮은 아파트를 얻어줘라 하니까 일선에서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교육부하고 조금 교감을 하셔서 거 상향조정

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게 우리 조일환 위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조일환 위원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IMF 사태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천재지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말단 공무원한테 IMF고 뭐고 소용없어, 이거 재산 너 회수 책임져,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뿐이 양산이 안된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럴 경우에 어떤 지침을 주시고, 그 문제만은, 제가 뭐 그 사람 말 한마디 안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정말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그 의욕을 상실하는 이런쪽 보다는 그렇게 한번 국장님 저는 간구해 달라는 뜻입니다.

● 이기수 위원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고 걱정을 하셨는데 아마 국민일보인가 신문에 한번 “초등학교 영어교육 흔들린다.” 하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대개 원어민 교사는 대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데려온 영어 교사들일텐데 그 이외에 주거환경도 다르고 대우가 형편없는데 어떻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앞부분만 읽다가 그냥 다 읽으려다가 못 읽고 왔는데 대우도 형편없지 말입니다. 또 주거도 자기들 아파트 생활하다가 여기 오니까 돈이 적게 지원되는 바람에 아파트도 구입 못해 주지, 그러면 여기 원어민 교사가 많이 떠난다는 얘기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영어교육 말입니다 강화한다고 해 갖고서 법석을 떨고 초등학교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제는 실전없는 방향이란 얘기에,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래서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원어민 교사를 많이 확보해서 영어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얘이지, 집만 번듯하고 시설만 됐다고 하고 발음 엉터리로 하고 말입니다 한다면 이거 영어교육 향상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써서 하셔야지, 국장님 신중히 고려해서 갖고서 대우를 해줄 만큼 해줘 갖고 위원님들 걱정하는 대로 말입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조일환 위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하나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문제만은 우리 충북이 정말 예산을 잘 썼다고 하는데, 이걸로 봐서는 국장님, 작년에 잘 썼다고 못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정말 수용을 하고 개선대책을 세우자 이겁니다, 세우자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지역내 가끔 신문에도 납니다만은 선공사 하지 말자 이거여, 그런 현장에 저희들 눈에도 띄일 때는 의결은 올라왔는데 공사는 하고 있단 말이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되도록, 되도록 그런, 그것 때문에 공사는 다 안끝났는데 돈 안준다, 아직 수속이 안됐어, 의

결도 안됐어. 예산이 배정..., 그러니까 싸움이 나고, 이거 관에서 우선 공신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특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느 도의 사립학교를 가봤습니다. 그 사립학교 교장·교감 고무판, 그 유리판 밑에 보면 교육위원회 칼라사진 거기 다 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보면 교육위원이 얼마나, 뭐 우리 부의장님도 가끔 얘기하십니다만은, 또 이기수 위원님은 어느 공석상에 갔더니 참 소개도 안하더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행청의 정말 참모들이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하나다 말이야, 하나다, 이 양반들 할 얘기 있으면 하고 그 양반들 못하면 못한다고 그러고, 좀 그런 쪽으로, 저는 그런 것을 7년째 있습니다만은 못 느낍니다.

뭔가 우리가 물리는 것만 같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사하는데 인사해 달라고 아니라 벌써 그런 데는 사립학교 교장 책상 밑에 유리판에 그런 정도 됐다면 정말 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하나가 돼서 그 도의 교육을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같은 사람은 일선 학교 가려고 해도 부끄러워서 못갑니다. 누구시죠?, 뭐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이 결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남입니까? 이런 인연이 얼마나 참 정말 대단한 인연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도 글썽

어느의식에 가보니까 교육감 축사, 도지사 축사,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의장도 축사하고, 도의회 의장도 축사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미안합니다만은 모 어는 처에서 그렇게 우리 의장님 축사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저도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가 충북교육을 걱정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거 잘 하는 애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충북교육에 애착이 있어 이 자리에 남아있고, 그래서 서로 정말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그 부탁의 말씀은 제가 나중에 교장선생님들 회의를 하는 기회가 있으면은, 뭐 공문으로 넘길 수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

#### ● 조일환 위원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 위원장 이상일

조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예산은 쓰여진 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잘 모르는 부분도 몇가지가 있고, 또

앞으로는 이게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결산개요 5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약간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 유치원·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에 지원되는 학교운영비의 예산불용액이, 제가 프토테이지를 봐 봤더니 약 5.6%에서 9%에 해당하고 그 총액이 228억 5,552만 6,000여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학교로 직접 투자되는 학교운영비만큼은 당해연도에 재투자 해서 학교운영예산 지원율을 향상시킬 수는 없는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제 올해부터 학교회계제도가 좀 변경돼서 그 학교장이 그것을 전부 다 집행해서 잔액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회계제도가 바뀌어서 충분히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아까 이기수 위원님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연간 5% 이상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이고요 지난 해는 5%인데 학교운영비는 절감예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행정경비만이 지금 절

감이 되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시설비의 낙찰차액입니다. 그것들이 남아있는 것이고, 학교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남아도 이월해서 씁니다.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학교회계제도가 되니까 학교에서 남는 것은 이제 쓸 수 있어요. 대부분의 시설잔액도 일선 교육청에다가 조금 재량권을 좀더 주셔서 거기서 편성해서 쓰면은 좋을텐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린 것 같은데 이게 도교육청으로 다시 모여졌다가 예산을 또 편성해서 하려니까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일선 교육장에게도 힘도 실어주고 또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적당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그 범위를 조금 높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거 답변을 아주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이상일

예, 올려주시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왜냐 하면요, 이걸 지난번부터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고 쓰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7차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큼니다. 신설학교경비라든지 수용시설 경비는 저희들이 낙찰차액을 못 쓰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내 전체적으로 어떤 형평성의 기회라든지 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하에 쓸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에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통털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127쪽에서부터 약 244쪽까지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이 자꾸 눈에 띄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그 청주교육청은 보니까 초등학교 환경개선비가 불용액이 44% 남았고, 또 충주도 보니까 초등학교 중·개축 이런 쪽에서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거기 127쪽이나 138쪽 보면은 402번, 시설부대비 2,790만원이 있죠? 그게 거의 불용액이 2,142만원이 그냥 남았던 말이에요. 이 시설부대비가 뭐를 의미하는 건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불용액이 과다하게 생긴 것은 주로 시설 낙찰차액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여비라든가 뭐 그 기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불용

액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A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비를 세웠는데 B 사업을 또 하려다 보니까 거기 또 여비가 또 들어가고 이런 경우에 이제 한번으로 이제 여비를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으면, 이와 같이 부대시설 집행상의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사업추진비에서 시설비 예산의 일정비율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조사를 한다든지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공공요금, 재수수료, 그런 게 거기 해당하는 거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그렇다면 잔액이 순수한 불용액이라면 시설부대비 편성비율을 하향조정할 필요는 없어요? 금년도 봐 가지고.

그것도 다음에 좀 그렇게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결산서에 130쪽에서부터 256쪽까지 죽 한번 보니까 청주에 중등교과서 무상지원이 말이죠 예산액이 649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게 잔액이 무려 488만 9,000원, 약 75%가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리고 충주도 보면은 그렇고, 그래서 시·군교육청 일부 사업비의 그 불용액이 약 40%에서 70%인 바 이는 정확한 소요예산을 잘못 예측한 건지, 아니면 사업비를 우선 확보한 후에 사업변경 또는 담당자의 사업

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해서 그런 건지 하는 것을 좀 분석을 하셔서 이게 그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중등교과서 무상지원이 청주에 그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130쪽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안되시면 나중에, 답변 하시겠습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자료로 드릴까요, 그럼요?

● 위원장 이상일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세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여기는 특수교육 대상자 교재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부분보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적어서 아마 불용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가 다시...

● 이상일 위원

죽 한번 보니까 시·군교육청 초등 무상 교과서 대금은 약 90% 이상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중학교 무상교과서 대금은 예산액이 2,352만 7,000원인데 이중 619만원만 집행이 되고 예산불용액이 평균 73%가 되더라구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 위원장 이상일

충주, 괴산, 음성은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한번...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것이 전년도 8월에 예산작업을하다 보니까 그 익년도에 특수교육대상자 파악이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과서구입비가 불용액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몽텅거려서 결산서 부속서류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거기 몇가지 나와있는데 주요사업 예산집행 점검에서 이제 교원국내연수 문제, 저소득층자녀 컴퓨터보급 문제, 이런 데도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저소득층자녀 컴퓨터 보급도 이걸 좀더 알뜰하게 집행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그 학교보건급식 관리에서 결식아동 증식지원비도 불용액이 3.3% 남았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은데 우리가 맨날 이 결식아동증식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돈이 남았다는 거에 조금 마음이 언짢아서 그러는 거지 액수가 커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방송통신고 운영,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그 다음에 교육정보화센터운영, 여기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학부모컴퓨터연수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불용액이 54%가 생겼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하실 건지, 또 이것이 추진이 잘 안되면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리시든지 해서 우리의 이 소중한 예산이 기왕 세웠으면 알뜰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예산을 세우실 때도 조금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좀 검토하시고 예산 편성 및 사용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진하 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예, 송진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죠.

● 간사 송진하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인원에 대한 정원은 T/O라고 그러고, 물품에 대한 정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정수라고.

● 간사 송진하

그걸 정수라고 그래요? T/O라는 이름은 없어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본래 인원은 정원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영어로 약자로 군대에서 사용하던 식으로 T/O, T/O 그러는 거지 정식적인 행정용어는 정원입니다.

● 간사 송진하

그러면 이 결산검사의건서 그 19페이지를 봐 주세요.

아까 질문하는데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그 물품 면에 보시면 이걸로 봐서는 좀 의문가는 면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물품결산은 물품의 증감이나 현재액도 중요하지만 물품의 정수기준에 맞게 예산을 집행했느냐, 그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년에는 이 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전기·기계 같은면은 '99년도 말에 수량이 2,832, 금액이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금액이 있는데 정수는 몇 %냐, 거기 표시가 나오고, 그리고 2000년도 중에 증이 얼마고 감이 얼마인데 정수를 얼마만큼 채웠다, 이렇게 돼야 예산이 잘 집행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수기준이 나오도록, 명시가 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

● 위원장 이상일

이상 마치시겠습니까?

● 간사 송진하

예

● 위원장 이상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30분 제3차 소위원회에서 본 2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0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이상일, 간사 송진하,  
위원 이기수,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서면답변서(별첨 2)

※ 별 책 부 록

-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본회의(별책 1)
- ▶ 2000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사개요-본회의(별책 2)
- ▶ 2001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본회의(별책 3)
- ▶ 2000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작성지침-본회의(별책 4)



#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6월 22일 (금요일) 10시 31분

## 議事日程 (제129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附議된 案件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31분 개회)

### ● 위원장 이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2차 소위원회에서 2000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부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32분)

### ● 위원장 이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33분)

● 위원장 이상일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적극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청 관계관계서  
도 성실히 준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청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들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의 예산집행에 적  
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사  
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칩  
과 아울러, 제3차 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  
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 4명

위원장 이상일, 간사 송진하,  
위원 이기수, 이충원.

○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시설과장 오형균.

제12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1. 7. .

위원장 이 상 일 



(별첨 1)

제129회 임시회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

○기간 : 2001. 6. 20(수) ~ 6. 22(금) / 3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01. 6. 20.(수) ●11:40~	○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 위원장선출의건 - 간사선출의건 - 의사일정결정의건	
2001. 6. 21.(목) ●14:00~	○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심사) -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 승인의건(심사)	
2001. 6. 22.(금) ●10:30~	○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의결) -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의결)	



(별첨 2)

# 서 면 답 변 서

## 조일환 교육위원님 요구자료

(제129회 예·결산 소위원회 요구자료)

### □ 잡종재산 목록 □

2001.1.1현재

(금액단위:원)

구분	건수	면적(m <sup>2</sup> )
부지	588	3,472,659.081

## 잡종재산 현 용도별 현황

구 분	필지수	현 용도	수량(㎡)
청주교육청외2필지	3	경작지	1,639
충청북도교육청 1필지	1	구)옥천공고부지	9,793.52
미원초외24필지	25	답	22,259
청주여고외13필지	14	대지	3,865
추평초외63필지	64	도로	11,025
옥천중외41필지	42	사택부지	19,681.711
청주농고외 22필지	23	실습지	35,258
북암야영장 3필지	3	야영장부지	7,066
한송초외21필지	22	임야	816,319
제천고외62필지	63	전	52,281
청주농고외13필지	14	주택부지	1,639
동광초외17필지	18	진입로	5,486
제천교육청외1 필지	2	청사부지	220
용암초외1필지	2	하천	2,277
세성초외4필지	5	학교림	1,411,390
중앙여고외286필지	287	학교용지	1,072,459.85
합 계	588		3,472,659.081

## 잡종재산 용도별현황

지역	구 분	필지수	용 도	수 량(m <sup>2</sup> )
청주	청주교육청외2필지	3	경작지	1,639
소계		3		1,639
청주	충청북도교육청 1필지	1	구)옥천공고부지	9,793.52
소계		1		9,793.52
청원	미원초외8필지	9	답	6,484
옥천	죽향초 1필지	1	답	50
영동	천덕초외5필지	6	답	6,468
진천	옥동초외1필지	2	답	71
음성	수봉초외4필지	5	답	9,005
단양	황정분교외1필지	2	답	181
소계		25		22,259
청주	청주여고외2필지	3	대지	1,111
보은	중초분교외3필지	4	대지	1,468
진천	삼수초외2필지	3	대지	530
괴산	이담분교 1필지	1	대지	218
음성	수봉초 1필지	1	대지	443
단양	단양교육청외1필지	2	대지	95
소계		14		3,865
충주	추평초외10필지	11	도로	1,392
제천	공전초외1필지	2	도로	830
청원	기암분교외3필지	4	도로	608
보은	중초분교외1필지	2	도로	71
옥천	청성초외4필지	5	도로	1,390
영동	용산초외17필지	18	도로	2,473
진천	신덕초외2필지	3	도로	317
음성	삼성초외5필지	6	도로	2,175
단양	단양교육청외12필지	13	도로	1,769
소계		64		11,025
청주	충청북도교육청외6필지	7	사택부지	1,450.811
충주	충주교육청외4필지	5	사택부지	2,141.9
제천	대전분교 4필지	4	사택부지	4,189
청원	남일초외4필지	5	사택부지	2,093
보은	보덕초외10필지	11	사택부지	4,918

## 잡종재산 용도별현황

지역	구 분	필지수	용 도	수 량(㎡)
옥천	옥천중 1필지	1	사택부지	231
영동	용암초외4필지	5	사택부지	2,196
진천	옥동초 1필지	1	사택부지	562
음성	무극초 2필지	2	사택부지	951
단양	노동분교 1필지	1	사택부지	949
소계		42		19,681.711
청주	청주농고 4필지	4	실습지	12,811
충주	추평초외5필지	6	실습지	6,862
청원	가좌분교 1필지	1	실습지	583
보은	소여분교외1필지	2	실습지	2,698
영동	용산초외4필지	5	실습지	6,261
진천	만송초외2필지	3	실습지	2,253
괴산	제월분교 1필지	1	실습지	1,369
단양	적성분교 1필지	1	실습지	2,421
소계		23		35,258
보은	북암야영장 3필지	3	야영장부지	7,066
소계		3		7,066
제천	한송초외1필지	2	임야	200,926
청원	용곡분교외3필지	4	임야	221,908
옥천	용촌분교 1필지	1	임야	9,521
영동	용산초외5필지	6	임야	319,585
진천	이월초 1필지	1	임야	370
음성	오생분교 1필지	1	임야	1,040
단양	금곡분교외6필지	7	임야	62,969
소계		22		816,319
제천	제천고외2필지	3	전	3,243
청원	증암분교외7필지	8	전	5,494
옥천	죽향초외2필지	3	전	1,658
영동	용산초외7필지	8	전	18,806
음성	무극초외2필지	3	전	1,010
단양	단양교육청외37필지	38	전	22,070
소계		63		52,281
청주	청주농고 8필지	8	주택부지	519

## 잡종재산 용도별현황

지역	구 분	필지수	용 도	수 량(m <sup>2</sup> )
제천	봉양초 1필지	1	주택부지	281
청원	가덕초외1필지	2	주택부지	343
옥천	죽향초 2필지	2	주택부지	60
음성	무극초 1필지	1	주택부지	436
소계		14		1,639
충주	동광초 1필지	1	진입로	138
제천	제천여고외6필지	7	진입로	4,097
보은	법수분교 1필지	1	진입로	409
괴산	대후분교 4필지	4	진입로	672
음성	원남초외4필지	5	진입로	170
소계		18		5,486
제천	제천교육청 1필지	1	청사부지	164
진천	진천교육청 1필지	1	청사부지	56
소계		2		220
영동	용암초외1필지	2	하천	2,277
소계		2		2,277
충주	세성초외4필지	5	학교림	1,411,390
소계		5		1,411,390
청주	중앙여고외1필지	2	학교부지	6,731.1
충주	충주여고외51필지	52	학교용지	177,486
제천	제천여고외 46필지	47	학교용지	142,878
청원	미원초외24필지	25	학교용지	62,764
보은	보덕초외19필지	20	학교용지	114,880
옥천	청동초외21필지	22	학교용지	129,702
영동	상촌초외40필지	41	학교용지	148,270
진천	광혜원고외14필지	15	학교용지	49,844
괴산	오수초외9필지	10	학교용지	51,398
음성	무극초외7필지	8	학교용지	60,901
단양	금곡분교외44필지	45	학교용지	127,605.75
소계		287		1,072,459.85
합계		588		3,472,659.081

## 2000회계 예산·결산 심의 결의에 대한 답변서

질의위원	조 일 환 위원님		
답 변 자	기획관리국장	관련부서	기획관리과

### 질 의 요 지

- 연도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비율, 사고이월액, 추가경정예산 편성 횟수 등 비교현황은?

### 답 변 내 용

- 연도별 예비비 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비 고
1998	13,132,263	806,634	6.1%	
1999	25,555,543	312,286	1.2%	
2000	39,726,831	28,469	0.07%	

- 사고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비 고
사고이월액	22,730,809	18,876,607	22,028,326	

- 추가경정예산 편성 횟수

구 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비 고
편성 횟수	2회	3회	3회	